정책연구보고서 2023-10
ISBN 979-11-984868-0-6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 개발

Gwangju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2023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Gwangju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정책연구보고서 2023-10
ISBN 979-11-984868-0-6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 개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연구책임 | 박종선 광주복지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공동연구 | 김진희 광주보건대학교 교수

김은영 (전)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실장

이상욱 광주복지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목차

요약 ····· v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

제2장 문헌고찰 ····· 5
제1절 협치의 이해 ····· 7
제2절 협치관련 조례 검토 ····· 14

제3장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운영 현황 ····· 33
제1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 ····· 35
제2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제1기 운영 현황 ····· 39
제3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제2기 분과위원회 운영현황 ····· 52

제4장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 개발 ····· 55
제1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규정 검토 ····· 57
제2절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 조사 ····· 63
제3절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 ····· 71

제5장 결론 ····· 95
제1절 요약 ····· 97
제2절 제언 ····· 98

참고문헌 ····· 101

부록1-6. 광주복지협치 기본 조례 및 연혁, 광주광역시 위원회 관련 조례 ····· 103

표 목차

〈표 2-1〉 협치의 개념에 대한 비교 ····· 8
〈표 2-2〉 '협치'가 명시된 광역단위의 조례 현황 ····· 14
〈표 2-3〉 '협치'가 명시된 기초지자체 조례 현황 ····· 15
〈표 2-4〉 광역시 협치관련 조례에 명시된 협치협의회 현황 ····· 20
〈표 2-5〉 광역시 협치관련 조례에 명시된 협치협의회 현황 ····· 21
〈표 2-6〉 협치의 개념에 대한 비교 ····· 22
〈표 2-7〉 광역시 협치관련 조례에 명시된 회의조항 ····· 27
〈표 3-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개정 현황 ····· 37
〈표 3-2〉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1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 40
〈표 3-3〉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1기 연차별 운영현황 ····· 42
〈표 3-4〉 2019년 복지분과별 복지협치과제 제안 현황 ····· 43
〈표 3-5〉 2020년 복지분과별 추진사업 ····· 44
〈표 3-6〉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2기 운영계획 ····· 54
〈표 4-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개정 주요 내용 ····· 57
〈표 4-2〉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조사 참여자 ····· 63
〈표 4-3〉 (참고자료) 제3기 복지협치위원 선정표 ····· 75
〈표 4-4〉 광주복지협치 주요 추진 사업 연간 추진 일정 ····· 87
〈표 4-5〉 광주복지협치 기본계획 연차별 추진 일정 ····· 90
〈표 4-6〉 광주복지협치 주요 추진 사업 세부 내용 ····· 9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과정 ····· 4
[그림 2-1] 굿 거버넌스의 8대 특징 ····· 12
[그림 2-2] 협치의 원칙 : 참여, 책무성, 투명성 ····· 13
[그림 3-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위원회 구성현황 ····· 40
[그림 3-2] 협치운영 문제점과 개선안 ····· 51
[그림 3-3] 광주복지협치 2기 운영 체계 ····· 53
[그림 4-1]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 조사 단어 뭉치 ····· 64
[그림 4-2] 광주복지협치 운영 체계 ····· 72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광주광역시는 복지정책에서 의제 발굴, 정책 및 예산 수립, 결과 평가, 환류 등 모든 과정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에 민관정 협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18년 3월 1일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1기 광주복지협치가 출범

□ 동 조례에 의거 복지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전담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그러나 조례 제·개정과 광주복지협치 제1기 및 제2기 운영과정에서 표준화된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광주복지협치 기본 계획'에서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본 연구는 광주복지협치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표준화된 운영 지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협치 관련 문헌, 타시도 조례 및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함

○ 둘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운영 현황을 파악함

-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정 배경을 살펴봄
- 제1기 및 제2기 광주복지협치 운영 현황을 파악함
-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규정을 검토함. 조례는 광주복지협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의 해석에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으나 지침(안)에 세칙을 추가하여 해석을 명확히 함
- 광주복지협치 참여 경험이 있는 협치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치 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광주복지협치 운영 현황 평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규정 및 협치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 마련

2. 광주복지협치 운영 현황 평가

□ 광주복지협치는 제1기 9개 분과에 126명, 제2기 8개 분과에 94명, 제 3기 8개 분과 97명이 참여함

○ 광주복지협치 운영상 나타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음

- 광주광역시 유사 위원회와 기능 중복성 및 차별성 문제
- 단순화된 복지협치 조직 체계로 분과 간 충분한 의사소통 부족
- 분과위원간 수평적 협력관계와 위원 활동의 책임성 미흡
- 협치 위원의 잦은 변동 및 실무진 참여자 부족
- 현안문제에 대한 정보부족, 정책역량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정책제안 과제의 한계

3.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규정 검토

□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2018.3.1.(조례 제 5057호) 제정되어 3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제정조례와 현 개정조례 비교

기구	기능		비고
	제정조례	현조례	
복지협치 위원회	심의의결 30명 이내(일부)	심의의결 100명 이내(전체)	
	공동위원장(3명) - 행정부시장 - 소관 상임위장 - 민간위원들이 추천하는 민간대표	공동위원장(3명) -행정부시장 - 소관 상임위원장 -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분과위원회	심의자문	심의자문	
전체회의	연1회	전체회의 삭제	현) 협치위원회 정기회의가 전체회의로 운영
실무협의회		협의조정 및 지원	20년 신설
전담기구	사무처 (조직운영 및 사무처리)	사무처 (조직운영 및 사무처리)	실무협 소속 →실무협 분리
간사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지원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지원	

○ 조례는 협치 운영과 관련하여 앞에서 제시한 기구 이외에 복지협치 시민회의, 복지협치 기본계획, 복지협치사업, 복지협치백서를 규정하고 있음

4.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조사

□ 광주복지협치 운영과 관련하여 협치위원으로 참여 경험이 있는 민관정 관계자 17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의견조사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문제는 협치기구의 기능 비명확성, 민관정의 비대칭적 참여(행정의 소극성), 전담기구의 기능과 독립성, 발굴의제의 실행력 및 참여 인센티브 부제 등으로 확인됨

5.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

□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은 10장으로 구성함

차 례

1.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 개요
2. 복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간사
6. 전담기구
7. 복지협치 시민회의
8. 복지협치 기본계획
9. 복지협치사업
10. 복지협치백서

○ 운영 지침(안) 작성을 위한 기본 방향은 먼저 「광주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관련 규정을 기본으로 함

- 이 외에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등을 참고하여 보완함
- 이상 관계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광주복지협치 운영 현황 평가 및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세칙'을 통해 보완함

- 또한 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개선사항'을 통해 의견을 제시함

6. 제언

□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음

○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이미 조례 및 관련 법규(예,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지침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광주복지협치 운영이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돼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협치 관계자 및 참여자들이 조례와 운영 지침(안)을 참고삼아 협치 운영에 과(過)하지도 않고 부족(不及)하지도 않는 적정수준의 참여가 있다면 운영 또한 막힘없이 흐를 것으로 생각함.

□ 광주복지협치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운영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함

○ 의제 실행력 확보를 위해 협치의제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함

- 제1기 및 제2기에서 제안된 복지협치의제가 실행까지 이른 경우는 드믄 것으로 파악됨
- 협치 관계자 의견조사에서도 의제 발굴과 제안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험이 광주복지협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까지 이어지기도 함
- 협치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에 제안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협치의제 발굴과 논의에 머무른다면 광주복지협치가 정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민간의 협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제3기 협치위원 중 민간위원 참여도가 낮음
- 민간의 협치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인센티브제, 즉 회의수당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협치 관계자 의견조사에서도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요구가 수렴됨
- 다만,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협치의 개념과 참여수당이 공존 가능한가에 대하여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전담기구의 독립성 보장

- 전담기구는 '광주복지협치'의 기구임. 단지, 전담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기관(1기 광주복지재단, 2기 및 3기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잠시 위탁한 것임
- 따라서 전담기구의 인력, 예산, 사업이 수탁기관과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함

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복지협치란 시민과 시, 의회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예산, 조례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복지혁신 및 실천방안 등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2조).

광주광역시는 복지정책에서 의제 발굴, 정책 및 예산 수립, 결과 평가, 환류 등 모든 과정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에 민관정 협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18년 3월 1일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1기 광주복지협치가 출범하였다.

2020년 9월 조례를 개정하여 제2기 광주복지협치가 출범하면서 민간과 행정, 의회가 협력해 상시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복지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에 노력하였다.

2023년 3월 '광주복지협치 기본계획'을 발표와 함께 제3기 광주복지협치가 출범하면서 '민관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복지협치공동체 광주'를 목표로 광주복지협치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례 제·개정과 광주복지협치 제1기 및 제2기 운영과정에서 표준화된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진희, 2023). 이에,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 개발이 '광주복지협치 기본 계획'의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다(세부과제 1-1. 복지협치 가이드라인 작성·관리).

본 연구는 광주복지협치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표준화된 운영 지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협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둘째, 광주복지협치 기본 조례 및 광주복지협치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조사를 통해 협치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넷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통해 운영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협치운영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협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협치 관련 문헌, 타시도 조례 및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 제1기 및 제2기 광주복지협치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규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광주복지협치 참여 경험이 있는 협치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치 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 간담회 형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광주협치운영 현황 평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규정 및 협치 관계자 의견조사를 기반으로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을 마련한다.

연구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과정

2 문헌고찰

제1절 협치의 이해

제2절 협치관련 조례 검토

2 문헌고찰

제1절 협치의 이해

1. 협치의 개념

협치(governance)는 학문의 영역과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된다. 즉 '협치'는 일종의 '개념어'로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협치 혹은 거버넌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중점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세계에 대한 행정과 시장 사회와 경제의 이분법적 인식이 유의하지 않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문제해결의 기제 사회, 조정의 원칙의 재구성 논의로 연결되었다.

협치의 구체적인 등장배경은 세계화와 정보화, 신자유주의의 확산, 전통적인 행정 패러다임 변화(최성욱, 2003; 홍성태, 2002)이다. 이 외에도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체제 약화로 인한 국가운영방식의 패러다임 변화(Kooiman, 1993), 대의민주주의이론에 근거한 전통적 정부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접근을 수용하여 시민사회 영역과 정부부문간의 상호작용과 상호협력에 의하여 사회의 불확실한 변동에 대응하고 국정운영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시대적 요구(김석준 외, 2002)등을 협치의 등장배경으로 언급하고 있다(이재경, 2010).

협치는 개념정의의 수준에 따라 정의(홍성태, 2002; 라미경, 2009)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협치는 광의와 협의의 정의로 구분될 수 있다(Jessop,1999), 광의의 개념으로서 협치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와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조정양식을 의미한다. 즉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 조정양식으로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것이다(Stocker, 1998). Rhodes(2000)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협치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협치는 광의의 협치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개념

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러운 조정양식의 원형으로서(Jessop, 1998) 기존의 위계적인 국가조정양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국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홍성태, 2002: 라미경, 2009). Kooiman and Vlet(1993)에 의하면 협치는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정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협의의 협치는 논의의 중심을 시민사회에 두고 있는 것은 광의의 협치가 논의의 중심을 정부에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협의의 관점에서 협치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영역 간의 협력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용하며 시민문화의 강화, 자발적 행동의 촉진,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기반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홍성태, 2002). 또한 협의의 협치는 '네트워크'를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Jessop, 1997; 이명석, 2003).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이고 유동적인 존재로서 복잡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정부와의 협상의 결과 형성되는 것으로 정부의 명령이나 정부와의 파트너쉽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협치의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을 비교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협치의 개념에 대한 비교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시민사회의 자연조정양식의 원형	새로운 형태의 상호협력의 조정기제
시민사회 중심	중앙정부의 최소한 역할 강조
네트워크 강조	국가. 시장, 시민사회 파트너 강조

참조: 이재경(2010)

협치(governance)는 공동체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하는 사회적 기제와 절차, 구조와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부터,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사이 조정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으로서 투명성, 공적 책임성(accountability) 등 발전과 개선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모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거버넌스 개념은 행정학, 경제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정책학, 사회학 등 학문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시민단체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특히 공공행정 분야에서 관료중심의 통치로부터 수평적·분권적·협력적 관리로의 정책 환경 변화들을 묶어내는 개념(organizing concept)으로 많이 사용된다(김석준 외, 2002).

2. 협치의 분류 : 개념 및 유형

협치(governance)를 개념분류와 유형분류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성욱, 2003; 이영돈, 2010).

먼저 개념분류를 살펴본다. Rhodes(2000)는 ① 기업 또는 국가의 감사, 투명성, 정보공개 등의 절차를 강조하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② 재화 거버넌스(goods governance), ③ 민간경영기법에 의한 정부관료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④ 정부-시장-시민사회간의 경계변화를 강조하는 신정치경제(new political economy), ⑤ 단일권력중심의 부재를 강조하는 국제적 상호관계(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⑥ 사회 사이버네틱체계(socio-cybernetic system), ⑦ 네트워크(network) 등 일곱 가지로 정의하였다. Pierre(1999)는 ① 신공공관리에서의 관리를 강조하는 관리적 거버넌스, ②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조합주의적 거버넌스, ③ 파트너십을 통한 발전을 강조하는 성장지향적 거버넌스, ④ 중앙-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복지 거버넌스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분류를 살펴본다. 거버넌스의 유형은 ① 분석의 수준 및 차원에 따라 세계화물결과 함께 국가 간 협력과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인접국가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또는 그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리저널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개별국가 내부에서 새로운 국정운영방안을 찾기 위한 내셔널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지역공동체에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가상공간을 통해 형성되고 운영되는 사이버 거버넌스(cyber governance), ② 대상과 이슈에 따라 그린(green) 거버넌스, 테크노(techno)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사이버 거버넌스, NGO 거버넌스, ③ 주체에 따라 국가중심 거버넌스, 시장중심 거버넌스,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④ 내용에 따라 기업(corporate)거버넌스, 재화(goods)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최성욱, 2003).

다음은 지역사회와 관련한 거버넌스의 개념들을 살펴본다. 공간적 측면에서 거버넌스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현될 때 이를 로컬 거버넌스라고 한다(김석준, 2000).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 로컬 거버넌스이며,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조직들에 주로 초점을 둔다. 로컬 거버넌스는 첫째, 지역사회에의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며, 둘째, 지역시민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재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공하는데 그 중심목표를 두고 있다. 즉,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미래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김창기, 2007).

즉, 거버넌스(governance)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인 거버먼트(government)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의미로서 등장하였으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NGO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의 관심사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구,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에 바탕을 둔 분절화된 공적영역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Governance)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체제, 제도, 메커니즘 및 운영방식을 말하며, 정부만이 공적의 영역을 대표하던 것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정책에 참여하여 공공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재정(Finance), 정보(Information),인력(Man-Power) 등을 상호지원하고 협력과 연계 및 조정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용돈, 2010)

3. 협치의 기본원칙

1)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원칙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치의 기초가 될 것을 제시하는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규모의 원칙을 비롯해 민주주의 원칙, 책무성 원칙, 합리성 원칙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이영재 외, 2020; 주성수 2017)

첫째, 규모의 원칙은 정책을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보다 광역정부, 광역정부보다 기초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보다 소규모 커뮤니티가 최상의 정책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와 욕구를 잘 반영해야 할 뿐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며 또 집행됨으로써 시민의 자치 거버넌스(self-governance)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일의 원칙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 원칙으로 과거의 소수 엘리트와 이익집단 중심의 정책결정을 지양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를 개방시켜 자유로운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정책결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책무성 원칙이다. 지역의 시민들은 주민이자 커뮤니티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합리성 원칙은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와 과정 합리성을 중시하는 원칙으로 정책결정이 엘리트와 전문가 주도의 질서정연한 관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토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

2) UN의 굿 거버넌스 8대 원칙

"UN 굿 거버넌스"는 "United Nations Good Governance"의 약어로, 국제연합(UN)이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부 및 기관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및 참여를 강화하는 원칙과 가치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 및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UN 국제개발전지속가능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인 "16번 목표: 평화, 정의 및 강력한 기관을 구축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를 보장하라"와 관련이 깊다. 이 목표는 국가 내부 및 국제 사회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기관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은 굿 거버넌스, 즉 모범적 협치의 8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굿 거버넌스는 참여적이며, 합의 지향적이고, 책무성, 투명성, 효과/효율성, 형평/포용성을 가지며 법의 규칙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는 참여(Participation)이다. 이는 굿 거버넌스의 핵심 원칙으로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 또는 중간조직이나 대표를 통한 간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동시에 시민사회에 조직된 참여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굿 거버넌스는 공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공평하게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함. 소외층 등의 인권이 완전한 보장될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는 투명성(Transparency)이다. 이는 정책결정과 정책시행이 법과 규정에 따를 것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이나 정책시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유용되고 직접 접근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네 번째 호응성(Responsiveness)이다. 이는 협치 관련 제도와 과정들이 적정 시기에 걸쳐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합의 지향(Consensus

oriented)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사회 전체의 최상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합의를 이끄는 중재가 필요하다. 여섯째 형평/포용성(Equity and inclusiveness)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고 배제되지 않아 포용적 인식을 갖도록 보장할 때 사회 웰빙이 가능하다. 모든 집단, 특히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유지 또는 개선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일곱 번째 효과성/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이다. 굿 거버넌스는 협치의 과정과 제도들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효과성 원칙에 기초. 또 효율성 측면에서 굿 거버넌스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호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책무성(Accountability)이다. 책무성은 굿 거버넌스의 또 다른 핵심 원칙으로 정부 기관들뿐 아니라 협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등 민간기관들도 자신들의 제도적 이해관계자들에게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책무적이어야 한다. 이는 정책결정이나 정책시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들에 대해 책무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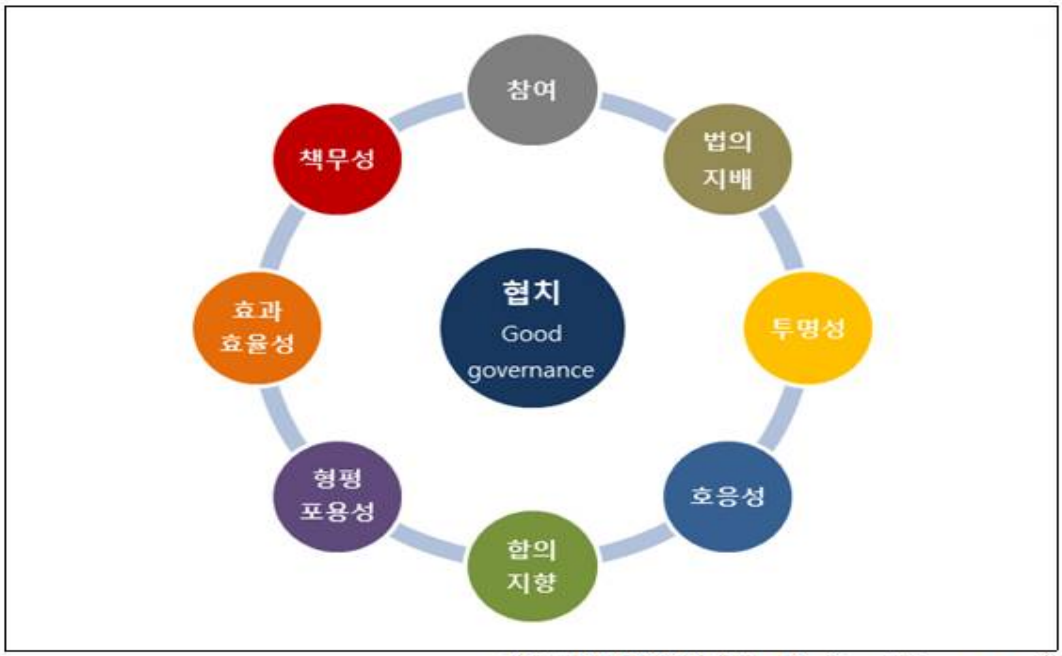

자료: UNDP(2009) "What is Good Governance?"

[그림 2-1] 굿 거버넌스의 8대 특징

3) OECD의 거버넌스 원칙(이영재 외, 2020)

OECD(2016)에 따르면, 열린 정부 개념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을 진흥하는 투명성, 책무성, 참여 원칙들에 의해 증진되는 혁신적, 지속가능한 공공정책에 기초하는 거버넌스 문화”를 말한다. OECD에서 ‘열린 정부’의 정책은 투명성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기관들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에 기반을 두는 책무성뿐 아니라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OECD가 제시하는 '열린 정부' 원칙들을 다음과 같다.

첫째, 투명성(transparency)이다. 정부의 자료와 정보의 공개는 제1세대 투명성, 제2세대 투명성은 정보가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적합한, 시의적절한, 유용한 것으로 공공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투명성을 의미한다.

둘째, 책무성(accountability)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업무와 정부 전체 및 공직자의 활동과 성과를 제시할 책임과 의무를 말한다. 민주주의 거버넌스 원칙에서 시민에 대한 책무는 시민이 적극 요청하든 하지 않던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셋째, 참여(participation)이다. 참여는 정책, 사업의 디자인, 시행, 평가에 개인과 집단들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를 통해 정부는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를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고자 한다. 정부는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정보를 공개하여 공유하며 제한된 자원으로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적 사고에서, 또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위기 상황에서 참여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또한 시민 개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며 정책 추진에서 시민의 지지 정당성 확보에도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2] 협치의 원칙 : 참여, 책무성, 투명성

제2절 협치관련 조례 검토

1. 협치의 관련 조례 현황

최근 협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 다양한 영역에서 협치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관련된 법률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자치법규명에 '협치'가 포함된 조례는 총 9건으로 확인되었다(2023.08.25.).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을 협치 관련 조례가 부재하였다.

〈표 2-2〉 '협치'가 명시된 광역단위의 조례 현황

번호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제개정구분)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2017.03.23.(제정)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2019.07.10.(제정)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2022.02.24.(개정)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2020.07.06.(제정) 2021.04.20.(개정)
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	2021.03.18.(제정)
6	경기도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2023.07.18.(개정)
7	충청남도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2023.08.10.(개정)
8	경상남도	경상남도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2022.05.06.(제정)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2021.11.23.(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23.08.25.기준)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의 '협치'와 관련된 조례 현황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관협치 조례가 있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각각 3개의 기초자치단체에 협치관련 조례가 있다. 울산광역시는 광역단위에는 협치관련 조례가 존재하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협치관련조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치관련 조례가 있고, 강원도의 경우는 광역자치단

체에는 부재하나 기초자치단체인 양구군에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다.

〈표 2-3〉 '협치'가 명시된 기초지자체 조례 현황

번호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비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분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관악구 더불어 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2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3건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3건
4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3건
5	울산광역시	없음	-
6	경기도	광명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양평군, 용인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11건
7	강원도	양구군	1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협치 관련 조례 분석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협치관련 조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8개의 특광역시 중 5개 특광역시가 협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가 2017년 03년 23일에 제정되었고 총 7개의 조로 구성되었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울산광역시는 민관협치 기본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는 협치관련 조례가 2개이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이다.

광역시 협치조례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2019년 7월 10일 제정되었고 총 3장 20조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칙에는 1조부터 6조로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었으며, 제2장 부산시민협치협의회는 7조부터 14조로 구성되었다. 설치, 구성, 임기, 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등, 수당 등이 제시되었고, 제3장에는 15조부터 20조까지이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에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관련기관 지원, 교육, 이행상황 등 공고이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2월 4일 일부 개정되었고 총 3장 24조로 구성되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는 2020년 7월 6일 제정되었고 23조로 구성되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로 2021년 3월 18일에 제정되었고 총4장 23조로 구성되었다. 총칙, 울산민관협치회의, 울산광역시 민관협치지원센터 등, 민관협치 기본계획 등으로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2021년 4월 20일에 일부 개정되었고 19조로 구성되었다.

1) 목적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로서, 조례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조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두 제1조(목적)에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조례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에서는 제1조(목적)는 사회복지 분야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서울특별시는 2조 정의에서 "협치"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의정활동과 일반 행정, 교육행정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집행기관"이란 시의회의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말한다. "단체장"이란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말한

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기본계획 조례를 보면, '민관협치'와 '공공숙의'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시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제시하였고, "공공숙의"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다양한 대안들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공동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집단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울산광역시는 민관협치, 지역사회 민관협치, 민관협치 공간, 공론장을 정의하였다. 민관협치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민간과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 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로 정의하고 광주광역시와 동일하다. "지역사회 민관협치"란 구 · 군 민관협치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민관협치 공간"이란 법령 ·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민관협치형 센터 및 민관의 협력 ·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 · 사회단체 등에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설치 · 운영되는 시설을 말하고, "공론장"이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을 위하여 시민의 제안을 보장하고, 숙의 공론을 통한 울산 의제 발굴, 추진전략 및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통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에서도 정의되고 있다. 복지협치란 시민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예산, 조례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복지혁신 및 실천방안 등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기본원칙

서울시는 제3조(기본원칙)은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방안을 도모한다. ② 의장과 단체장은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③ 의장과 단체장은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행정 및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한다. ④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이 함

께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의장과 단체장은 제4항의 회의와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의정활동과 일반 행정,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광역단위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자치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정의되고 있다.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제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5) 지자체의 책무

민관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자체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부산, 인천, 광주, 울산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추가적으로 소속 공무원의 책무를 명시하여 공무원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광주광역시는 민관협치를 제도화하고, 각 자치구는 물론 최소 행정 구역인 동까지 협치 체계가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는 시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였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는 타지자체와 동일하게 복지협치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자체장은 복지협치에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제시되고 있으며 부산, 인천, 광주, 울산에 제시되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7) 협치 협의회 : 설치

부산광역시는 제7조에서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시민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협의회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둘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제7조(설치)에서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인천민관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는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에서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울산광역시는 제7조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울산민관협의회의를 둔다로 명시되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에서는 제6조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와 의결내용은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복지혁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표 2-4〉 광역시 협치관련 조례에 명시된 협치협의회 현황

번호	지자체명	협치협의회 명칭	위원회 등 운영	비고
1	부산광역시	부산시민협치협의회	분과위원회	심의조정 협치추진단
2	인천광역시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협의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비 지원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복지협치위원회	심의 의결
5	울산광역시	울산민관협치회의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23.08.25.기준)

8) 협치 협의회의 구성

광역시 협치관련 조례를 보면 민관협치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제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과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민간 부의장을 수석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높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인천광역시는 제9조(구성)에서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⑤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선정기준과 모집기간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간사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에서는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시장, 시민대표가 공동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민관협치 업무담당 국장 및 실장·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

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는 제9조(구성)에서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에 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4명,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0명, 구청장 ·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5명, 시민으로서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사회혁신 · 공동체 · 시민소통 업무담당 실·국장 2명으로 공개모집에 지원된 사람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하고 있다.

〈표 2-5〉 광역시 협치관련 조례에 명시된 협치협의회 현황

번호	지자체명	구성	인원	비고
1	부산광역시	의장 1명(시장) 부의장 2명 (민간위원 중 호선 + 행정부시장) 민간부의장: 수석부의장	30명 이내	민간위원 1/2 이상 추천, 공개모집 성별고려
2	인천광역시	위원장 2명(시장+위원중 호선 선출)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으로 선출)	40명 이내	추천, 공개모집 성별고려 간사(총괄부서장)
3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공동의장 2명(시장+시민대표)	50명 이내	당연직 위원 명시 공개모집 성별고려
4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위원장 3명(행정부시장+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광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	100명 이내	위원을 구체적 명시 성별고려
5	울산광역시	의장 2명. 부의장 1명	30명 이내	위원에 대해 구체적 명시(명수포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23.08.25.기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에서도 협치협의회 구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협치위원회 위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하는 사람,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등 관련부서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여성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 복지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및 복지협치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그 밖에 복지협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등으로 복지협치위원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조례에서는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1조 실무협의회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각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대한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6〉 협치의 개념에 대한 비교

	복지협치 분과위원회	복지협치 실무협의회
구성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기능	1.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 2.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3.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4. 분과별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조사·연구 5. 그밖에 복지협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검토 및 조정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일정 등의 연계 및 조정 4.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 5.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복지협치에 필요한 지원

참조: 이재경(2010)

9) 협치 협의회의 기능

광역자치단체의 협치관련 조례에서 협치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인천광역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조정을 하며, 위원

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에서는 제9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숙의로 합의를 이끌어 낸다. ② 협의회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공숙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또는 권고를 시책 · 예산 · 입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민관협치 정책의 수립 · 시행 · 평가 · 환류 등, 민관협치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공론화위원회, 각종 위원회 및 민관협치형 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민관협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 · 권고 및 제도 개선, 민관협치 공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관협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며 민관협치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장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에서는 제6조(복지협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음 사항으로는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복지혁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0) 협치 협의회 : 임기

협치위원들의 임기를 명시한 조례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제9조에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는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이 되는 경우는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에서는 제 11조(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 ①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명시하였다.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에서는 임기에 대한 별도의 조항 없이 각각 제9조(구성)과 제7조(구성)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1) 위촉위원의 해촉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는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에서는 위촉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다.

12) 의장의 직무

부산광역시는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에서는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별도의 의장의 직무에

대한 조항이 없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간 협의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회의

부산광역시는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제14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회의론 공개와 관련되어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에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여부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는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부산광역시와 동일하다. 추가조항으로 ③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사유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규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비공개 결정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제 10조(운영 등)에서 ① 협치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

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치회의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⑤ 협치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시장은 협치회의의 결과가 지역사회 민관협치 네트워크 조직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 등은 회의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의 사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2조(간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2-7〉 광역시 협치관련 조례에 명시된 회의조항

번호	지자체명	구성	비고
1	부산광역시	정기회의(연 4회) 임시회의(의장이 필요하다 인정, 재적지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간사 (민관협치업무담당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의장이 필요하다 인정, 재적지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개최 7일전까지 공지 회의록 공개여부(별도조항)
3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정기회의(연 4회) 임시회의(의장이 필요하다 인정, 재적지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결과 공개 비공개 규정명시
4	울산광역시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공론화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간사1명(민관협치 업무담당부서장) 회의결과가 협치네크워크 확산노력
5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론과 회의결과를 회의종료일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공개 비공개 사유 명시 간사조항 별도(제12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23.08.25.기준)

14) 의견청취

부산광역시는 제13조(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인천광역시는 제16조(의견 수렴 등)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에서는 제14조(조사·연구 등) ①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 연구를 의뢰하거나 포럼 ·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 연구 활동 및 포럼 ·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제11조(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의견청취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지만 제14조 2항에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5) 수당

수당과 관련된 조항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에 명시되어 있다. 부산광역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에서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6)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대한 조항은 부산, 인천, 광주, 광주(복지협치), 울산지역 모두 제시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는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제시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제16조(민관협치 기본계획), 제17조(민관협치 실행계획)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항의 내용은 ① 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각호는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이며,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제5조(복지협치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 · 시행 하되,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제1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복지 분야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호의 내용은 복지협치 정책의 기본방향, 복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복지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③ 시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복지협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7) 민관협치 협약

민관협치 협약은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산, 인천, 광주, 울산지역 모두 제시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에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18)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부산광역시는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 시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고, 인천광역시는 시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민관협치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제20조)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20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서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 제19조에서 시장은 협의회가 권고한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에는 제16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 선정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그 협력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과 시, 시의회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복지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 관련기관 지원

부산광역시는 제18조(관련기관 지원) 시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제21조(민관협치 관련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는 제21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 정책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울산광역시는 제20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제17조(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④ 시장은 복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 이행상황 등 공고, 기록, 백서

부산광역시는 제20조(이행 상황 등 공고) 시장은 매년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민관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제23조(기록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백서 등의 형태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제22조(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백서를 매년 발간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18조(백서 발간 등) 시장은 복지협치 정책의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려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복지협치 백서를 발간한다. 울산광역시는

제22조(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의 내용 및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협치 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21) 실무기구, 전담기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실무기구나 전담기구에 대한 조항은 없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는 제17조(실무기구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관협치 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각호는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지원, 민관협치 관련 연수 및 교육 추진, 민관협치 관련 정보 수집 및 자료 정리 발간,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실무 준비로 명시하고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기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울산광역시는 민관협치 지원센터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민관협치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관협치지원센터를(이하 “민관협치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3조(민관협치 공간 설치 · 운영), 제14조(민관협치 공간 사용료 및 관리비), 제15조(재정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제13조(전담기구) 시장은 복지협치에 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2) 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제17조(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호는 복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국내·외 복지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복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개최, 복지협치사업의 집행 및 관리체계 구축,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라고 제시하고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복지협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

은 복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23) 포상

인천광역시는 제22조(포상)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는 제21조(포상) 시장은 민관협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공무원, 기관 ·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4) 교육

부산광역시에만 교육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조는 제19조(교육) 시장은 시 공무원과 시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다.

25) 운영규정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는 제16조(운영규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3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운영 현황

제1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
제2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제1기 운영 현황
제3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제2기 운영 현황

3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운영 현황

제1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

1.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는 2018년 3월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의 의제 발굴, 정책 및 예산수립, 결과 평가 및 반영 등 모든 과정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에 민관정 협치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치실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조례 제정 이전에도 민주도시 광주광역시는 시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에 의해 '광주다운 복지모형'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5년에 전국에서 최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되었다. 2017년에는 광주시민총회(금남로)에서 복지의제인 빈곤대물림 차단 프로그램 '희망플랜'이 시민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으로 채택되어 6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2018년은 무등복지관을 중심으로 NEET 방지 네트워크 NEED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북구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의 날 20주년인 2019년은 촛불과 오월의 상징인 금남로에 시민과 복지현장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광주복지 시민총회' 개최되었다.

이와 더불어, 민관정(민간, 행정, 의회) 협치에 기반한 광주다운 복지모형으로 성장하려는 강한 의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2015년은 광주복지현장과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주최로 '광주복지 정책예산 토론회'를 개최되었고, 2016년 6월에는 광주복지현장,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주최로 '민선6기 광주광역시장의 복지 분야 정책공약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광주복지대토론회'에 800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문제 등에 2017년 5월 1,200명이 장미꽃 투쟁에 참여하였다. 그 해 10월, 광주복지연대 창립대회 및 문재인 정부 복지 분야 국정과제 대토론회에 1,000명이 참가하였다.

2018년 2월에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광주복지연대 조례연구위원회와 광주광

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협력하여 ‘광주광역시 복지협치활성화 기본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고, 4월에는 광주복지연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공동주최로 ‘2019년 광주복지 민관정 정책설명회’가 개최되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의 수립과정을 연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11월 사회복지협치 조례 연구위원회 구성 및 연구 활동, 간담회
2018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최종안 합의
2018년 3월 1일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정
2018년 7월 31일 9개 분과위원회 추천
2018년 8월 9개 분과별 회의(분과장 선출)
2018년 9월 7일 광주복지협치 선포식
2018년 9월 17일 분과위원회 분과장, 간사간담회 2018 전면적 협치시정 운영

2.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개정 내용

민관협치와 관련된 조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다. 복지영역 협치 관련 기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에서 제정되었다. 또한, 민간과 행정 뿐 아니라 의회를 포함하여 민관정(민간, 행정, 의회) 협치에 기반한 광주다운 복지모형으로 성장하였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2018년 3월 1일 제정되었다. 2020년 9월 28일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 2020년 11월 13일에 일부개정, 2021년 4월 20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2020년 9월 28일은 복지협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복지정책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복지협치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자치 실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였다.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복지협치 기본계획,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4조 복지협치 시민회의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책무, 협치의 기본계획수립, 복지협치 시민회의가 신설되었다.

〈표 3-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개정 현황

제·개정일	조 항	개정내용
2018.03.01. (제정)	제정	
2020.09.28 (전부개정)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복지협치 기본계획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4조 복지협치 시민회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협의회, 복지협치 시민회의가 신설되며 전부 개정됨
2020.11.13 (일부개정)	제13조 전담기구	전담기구 신설
2021.04.20 (일부개정)	제5조(복지협치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 · 시행 하되,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제1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복지 분야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에 따른 변경
	제7조(구성)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이 공동으로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5명 이상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 1. 시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명시 구체화

자료 : 법제처(2022)

2020년 11월 13일에는 전담기구의 역할을 복지협치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뿐만 아니라 복지협치를 위한 복지협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협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되었다. 제 13조 전담기구 조항이 신설되어 일부 개정되었다. 2021년 4월 20일에는 제 5조 복지

협치 기본계획 조항에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 시행 하되,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제1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복지 분야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개정을 하였다. 제7조(구성)는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이 공동으로 한다’ 이며, 제11조(실무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5명 이상과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제2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제1기 운영 현황

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제1기 분과위원회 운영[1)]

광주광역시 분과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제3조(市 조례 제5057호)에 근거한다. 제1기 분과위원회의 전담기구는 광주복지재단에서 수행하였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3월 이후부터 전담기구는 설치되었으며 상시 운영되었다. 제 1기 분과위원회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2년 임기로 운영된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협치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가 전담하였고, 9개의 분과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제3조(市 조례 제5057호)에 근거한다. 제1기 분과위원회의 전담기구는 광주복지재단에서 수행하였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3월 이후부터 전담기구는 설치되었으며 상시 운영되었다. 제 1기 분과위원회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2년 임기로 운영된다. 분과구성은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국을 포함하고 있다. 9개 분과는 복지종합분과, 지역복지분과, 노인분과, 장애인 분과, 정신건강분과, 여성가족분과, 아동분과, 청소년 분과, 보육분과이다. 분과별 15명 분과위원들로 구성되었다. 복지협치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실효성 있는 의견수렴과 관련 의견서 제출에 있다. 분과별 정책을 발굴하고, 복지정책, 예산의 수립과 시행, 평가 및 의제를 수렴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실태조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성원들은 공동위원장의 합의로 임명과 위촉하였으며 복지관련 직능단체와 시설의 대표와 종사자로 구성되었고 소관부서의 관련 공무원들이 포함되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가 운영되면서 2018년 9월 17일 분과위원회 분과장과 간사의 실무자 간담회에서 복지협치 분과에 대한 운영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복지협치 분과 운영의 원칙은 공개성, 평등성, 민주성, 참여의 책임성이다. 공개성은 운영과 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통로 확보해야하며, 평등성은 개인의 직위가 아닌 역할로 참여하며 위원 누구나 평등한 권한과 책임 부여됨을 의미한다. 민주성은 참여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운영해야하며, 참여의 책임성은 민관 공동실행 협치조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모든 위원의 실질적인 활동이다.

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분과위원회 제1기 운영결과 및 성과보고(광주복지재단, 2020) 요약 및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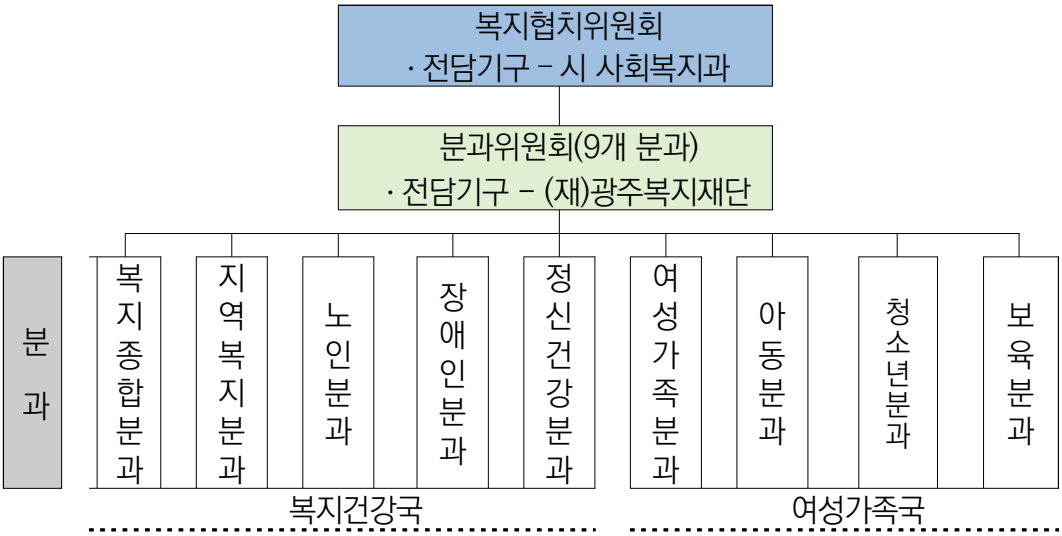

[그림 3-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위원회 구성현황

제1기 복지협치 위원현황을 살펴보면 위촉기간 내 활동한 분과위원 총인원은 205명으로 제1기 활동기간 내 분과별 위원현황(사임위원 포함)은 다음 표와 같다. 의회참여자는 시의회 환경복지위원 5명이 역할 분담하여 분과에 참여하였다. 행정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분과위원 변동이 있었으며, 민간의 경우 정기총회에 따른 직능단체 회장단 변동 등으로 분과위원 변경사항 발생하였다.

〈표 3-2〉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1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 분	복지종합	지역복지	노인	장애인	정신건강	여성가족	아동	청소년	보육
계	19	23	32	32	20	23	18	21	17
민 간	8	12	23	19	13	14	10	15	10
행 정	10	10	8	12	6	8	7	5	6
의 회	1	1	1	1	1	1	1	1	1

자료 : 내부자료(2020)

2.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제1기 분과위원회 운영성과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1기 분과위원회에 대한 성과는 운영에 대한 인식개선 측면과 실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인식개선 측면에서의 성과는 복지영역에서 협치를 법적 제도화하여 운영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2년간 복지협치 운영의 원칙 및 민·관·정 협치를 통해 의제의 정책화 과정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적 측면에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의원의 분과별 적극적인 참여로 분과 제안의제의 시책반영에 노력하였다. 민·관·정 숙의과정을 통해 분과별 핵심의제 발굴 및 확정하였는데 2019년에 9개 분과에서 12건의 핵심과제가 발굴되었고 복지협치위원회에서 12건 모두 가결되었다. 2020년은 분과에서 36개 과제가 발굴되었다. 이는 복지영역별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화장 마련하는 통로가 되었다. 공식적 형태의 복지 거버넌스를 이행중인 서울·경기와 「광역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마련으로 광주복지협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분과 운영의 원칙인 공개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보전달 노력으로 공개성 분야에서 긍정적 평가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2018년~2019년 연 단위 복지협치평가를 위한 전체 워크숍과 회의 등으로 협치 성과와 협치 방향성을 공유하였다. 분과위원회 1기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여 협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2기 운영방향과 분과위원 구성(안)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분과별 회의 이외에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실무기획단 회의가 개최되었고, 역량강화교육으로 분과리더교육, 복지예산학교 등이 실행되었다. 2019년 분과별 포럼을 진행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해 대응하기 위한 복지협치분과 위원회가 운영되었다.

2018년부터 2020년동안 광주광역시 1기 복지협치 운영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1기 광주복지협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 분과구성이 이루어진 후 분과리더 교육이 실시되었다. 2019년에는 역량강화 교육으로 복지예산학교가 운영되었고, 2개 분과에서 분과별 포럼이 이루어졌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복지협치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포럼이 이루어졌다. 2019년은 광역복지거버넌스에 대한 네크워크 회의가 진행되어, 경기, 서울과 함께 광주복지협치의 위상이 전국에 확대되는 기회가 되었다.

〈표 3-3〉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1기 연차별 운영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실무기획단	-	- 1차 회의(3.19) / 3명 - 2차 회의(9.16) / 6명	- 1차 회의(2.14) / 6명 - 2차 회의(8.25) / 7명
역량강화 교육	분과리더교육:'18.10.~11. (3회) / 44명	- 복지예산학교 :'19.6.(2회) / 98명	
포럼, 세미나	-	- 1차 노인분과포럼 :'19.7.9.(142명) - 2차 노인분과포럼 :'19.8.29.(118명) - 복지종합분과 포럼 :'19.7.23.(139명)	
전체회의	:'18.10.22. / 115명	:'19.12.23. / 185명	
광역 거버넌스 (광주,경기,서울)	-	- 네트워크 회의 :'19.7.~9.(3회)/ 21명 - 네트워크 포럼 :'19.11. / 22명	- 네트워크 회의 :'20.7.24.(1회) / 5명

3.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분과위원회 1기 제안과제

2019년에 9개 분과에서 12건의 핵심과제가 발굴되었고 추진되었다. 복지종합분과에서는 복지이슈 공론화에 대한 장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지역복지분과에서는 지역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안 마련, 복지행정 원스톱 민원해결체계를 마련에 대한 핵심과제를 발굴하였다. 노인분과에서는 노인복지 진단과 발전 모색을 위한 활동으로 포럼과 해외연수 등을 제안하였다. 장애인분과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 기존 시책사업의 평가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정신건강분과에서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가 양성 및 활성화와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여성가족분과에서는 광주광역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 조례 개정하였고, 광주여성복합 문화공간 건립에 대한 모니터링 과제를 도출하였다. 청소년분과는 학교밖 청소년 직업훈련 확대 및 심화 과제를 도출하여 일부 시책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분과에서는 정부 미지원시설 재원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로 지원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3-4〉 2019년 복지분과별 복지협치과제 제안 현황

연번	분 과 명	제 안 명
1	복지종합 (1)	1. 복지이슈 공론화장 마련 : 토론회 등 개최
2	지역복지 (2)	2. 지역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안 마련 3. 복지행정 원스톱 민원해결체계 마련
3	노인 (1)	4. 노인복지 진단과 발전적 모색을 위한 활동 (포럼, 매월 정기모임, 해외연수 제안 등)
4	장애인 (1)	5. 탈시설장애인자립생활 5개년 계획 모니터링
5	정신건강 (2)	6.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가 양성 및 활성화 7.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
6	여성가족 (2)	8. 광주광역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개정 9. 광주여성복합 문화공간 건립 모니터링
7	아동 (1)	10. 광주형 아동복지모델 구축
8	청소년 (1)	11.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확대 및 심화
9	보육 (1)	12. 정부미지원시설 재원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2020년은 분과별 협치과제는 모두 36개가 발굴되었다. 복지종합분과에서는 광주광역시 전생애 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분과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화,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권고안 이행, 종사자 연수, 자활일자리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시설 확충 지원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노인분과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 및 민간업체 내 실버카페 운영, 구립 노인복지관의 시보조금 지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지원 사업 운영 정상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활성화 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분과는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유급병가 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가보상제도 도입, 배리어프리환경 시범거리 조성,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개정, 커뮤니티케어 실천을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근무체계지원, 중증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감면지원, 감염병 발생 시 자립 생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신건강분과에는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재활훈련시설 구축,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광주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에 대한 3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여성가족분과

에서는 젠더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자립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혼인전 상호문화이해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제안하였다. 청소년분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성교육, 은둔형 학교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제주살이, 학교밖 청소년 복합체육시설 건립, 정신과적 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특화형 쉽터 건립, 가칭) 국립호남권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제안하였다. 아동분과에서는 아동복지자원 리스트 구축, 0~2세 영야중심 어린이집을 위한 운영비 지원,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법정부담금 지원, 보육교직원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 취사원 인건비 상향지원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3-5〉 2020년 복지분과별 추진사업

연번	분과	제 안 명	주 요 내 용
1	복지 종합	광주광역시 전 생애돌봄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분절적으로 확대·관리되고 있는 돌봄관련 사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이용자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 돌봄정책 종합지도 작성, 광주돌봄정책 개발 및 브랜드화
2	지역복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화 (중복수혜 및 특정 취약계층 몰림 현상 예방 등)	국가 긴급재난상황(예: 코로나19) 시 특정 계층에게 집중적 지원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 이에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한곳에서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등이 있거나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
3		보건복지부 인력 기준 권고안 이행	보건복지부「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른 인력기준 권고안 이행 요청 - 복지부 12명, 광주(가형 10~11명, 나형 9명, 다형 7명)
4		종사자 연수	폭넓은 복지선진지 견학을 위한 종사자 비용 지원 현실화
6		자활일자리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시설확충 지원	정부의 자활참여 1만명 확대에 따른 효율적 자활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한 단계별 제안 1) 사업추진을 위한 생산작업장, 판매장 등의 기반구축 지원 2) 자활/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장 시설확충 지원 3) 자활기업(사업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공간 지원 4) 영세 자활생산품의 효율적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조례제정

연번	분과	제 안 명	주 요 내 용
7	노인 분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종사자의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시스템 마련 시급 - 노인요양 전문가 확보 방안(장기근무 경력자의 이직율 방지와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학과 출신자의 유입 방안) - 시설장 자격제도 마련 - 노인요양시설 공영제 검토 - 노인복지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제안
8		공공 및 민간업체 내 실버카페 운영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에 따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및 민간(기업) 기관 내 실버카페 운영 *참고사례 - 화성시 실버카페 58개소
9		구립 노인복지관 시보조금 지원	중점추진사업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보조금 지원액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광주 지역 구립 노인복지관 운영 시, 구보조금 비율이 3:7이며, 최근 4년간 인상되지 않음
10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사업 운영 정상화	무료급식지원사업의 정상운영, 종사자처우 개선, 서비스의 지속성 및 질 향상을 위한 제안 - 경로식당 종사자 인건비(조리원) 등 운영비 지원 -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이 타당 -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 - 식자재구입 월 단위 결제(업무간소화 및 효율성제고)
11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보완으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운영활성화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제한된 수)에 진입하지 못하는 광주시 독거어르신의 4/5정도에 대한 긴급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할 수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필요. - 예산을 삭감 해버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4개 시설의 지원을 원상복귀할 뿐 아니라, 각 구별로 2개소 이상 보조금지원을 확대,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께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기본(법령에 의한 시설)이라도 갖출 필요 있음.
12	장애인 분과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싸스, 메리스 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집단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면역력이 약한 감염병 취약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인 척수 및 중증장애인들은 위한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
1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긴급한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중복서비스 방지 등을 위해 법령개정을 통해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동성 향상
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유급병가 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연 60일에 해당하는 병가 기간에 한해 유급휴가 지원(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유급병가제 및 대체인력 파견사업 도입) ※ 2019년도 서울형 유급병가제 사업 참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마련

연번	분과	제 안 명	주 요 내 용
15	장애인 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가보상제도 도입	연가대상일수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 보상비 지급(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내 연가수당 신설 제안)
16		배리어프리환경 시범거리 조성	건축물에 편중된 무장애시설을 넘어 시범거리 구역지정을 통해 무장애 거리를 조성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 확보 〉 배리어프리 환경이 조성된 시범거리 조성 - 시범구획(거리)을 지정하여 주택, 건축물, 보도 및 교통수단 등의 기준을 배리어프리 기준을 적용한 물리적 장애물 제거와 상호연계된 환경 조성 - 특정 지역(동 이하 최소단위)을 선정, 건축물부터 보도, 교통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길 안내(지도) 서비스와 연계 UD환경 무장애 보행로 확보
17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률 제정 목적의 실질적 이행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 〉 조례개정(의무구매 비율 상향조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1%를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우선구매 비율을 2%까지 상향 조정 〉 조례개정(의무구매 대상기관 확대) -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포함 * 서울, 대구지역은 우선구매비율을 2%로 상향(조례 개정)
18		커뮤니티케어 실천을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근무체계지원	2011년부터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거주시설로 유형이 개편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인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 현재 교대근무 인력 없이 1인으로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연차휴가 및 교육, 병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도 없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형태로 종사자들이 열악한 현장 〉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근무체계지원 - 1인 근무형태에서 종사자의 연차휴가, 교육((출장), 경조사, 병가 등에 대한 추가인력지원 필요
19		중증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감면지원	시내버스 요금 감면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시내버스 이용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 증진, 이동권 보장 - 중증장애인이 시내버스 탑승 시 무임교통기능이 부가된 복지카드를 시내버스 단말기에 접촉하여 버스요금 감면
20		감염병 발생시 자립 생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마련	감염병 발생시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취약함을 보완할 수 있게 하고 격리가 필요할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도 및 매뉴얼 마련으로 체계적 지원 -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시설 파악(소방학교 등)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조사 및 점검 필요 - 광주광역시 활동지원사 중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파악 - 격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등

연번	분과	제 안 명	주 요 내 용
21	정신건강분과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재활훈련 시설 구축	우리나라 중독자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이용시설은 인구 10명당 0.02개, 사회복귀시설은 0.01개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광주지역에는 이마저 없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5일 상시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종사자의 소진을 가져옴 - 중독질환 대상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주간재활 시설을 운영하여 중독 회복을 도움 - 광주 지역 중독자를 대상으로 교육, 사회적응 훈련 등을 위한 주간재활시설을 운영하여 재발가능성을 낮추고 회복 도모 - 광역 단위주간재활시설의 운영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실무자의 업무 부담 및 소진을 감소시키며 예방, 조기중재, 사례관리, 가족서비스 등 다른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기대
23		광주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환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신뢰,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권리와 책임감을 갖고 경험 전문가로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정신건강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에서 서울에 이어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개소되기를 간절하게 희망 - 대상: 광주지역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대상자 - 내용: 당사자 조직화, 권익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 동료상담 및 자립지원 / 2) 당사자 조직 3) 권익옹호 / 4) 정보제공
24	여성가족분과	젠더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자립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치	- 젠더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은 복합적 문제(행동문제, 성문제, 정서적 문제 및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등)를 지니고 있어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 - 대상: 보호시설 퇴소 예정으로 자립 자활 준비가 필요한 젠더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 사업내용 · 지원인원: 1가구당 4인 거주 · 지원기간: 2년(연장 1년) · 역할 (자립생활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훈련, 직업훈련 지원 등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개별상담, 심리치료, 교육 및 문화체험 활동 등 · 종사자: 4인(시설장, 상담원/야간 당직 근무 포함)
2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과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해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 진행, 홍보를 위한 캠페인 실시

연번	분과	제 안 명	주 요 내 용
26	여성 가족 분과	혼인 전 상호문화이해 교육 의무화	결혼제도는 서로의 성장배경과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의 결합, 더 나아가 가족이 만나는 중요한 제도로 혼인 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화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용대상: 결혼을 앞둔 시민 - 사업내용: 혼인 신고 전 상호 문화 이해 교육 의무화(각 구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정시간의 교육 이수하여 확인서 발급)
27	청소년 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성교육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영상 제작, 유포 등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그루밍, 협박 등에 의해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가해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성보호 캠페인 및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성교육, 미디어리터러시, 불법촬영, 유포 금지 등) 필요
28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제주살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정책적용대상: 광주지역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2018광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시 6개월 이상 집에만 머무른 경험자 24명/344명, 7%, 평균22개월~최대73개월) - 사업내용 · 제주살이를 통해 휴식과 치유의 시간 확보 · 1달, 2·3달 기간별(단계별) 설계 · 걷기, 봉사, 노동, 휴식, 교류 등 키워드 제주살이 진행
29		학교 밖 청소년 복합체육시설 건립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 '체육활동지원'에 대한 정책수요(63.1%)와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 제공'에 대한 정책수요(62.5%)가 높은 편 - 대상: 19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1,913명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 체육시설 내 체육활동 공간, 프로그램 활동 공간, 자유 공간 마련 무료운영 · 소요예산: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기본계획(1개소 1억원 내외, 국비70%)으로 일부 예산 지원
30		정신과적 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센터(특화형 쉼터) 건립	정신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입소로 인해 다른 청소년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정신·지적·경계선 장애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특화형 쉼터를 마련하거나 기존 쉼터 내에 정신 장애 청소년을 담당할 전문인력 배치 필요

연번	분과	제 안 명	주 요 내 용
31	청소년 분과	가칭)국립호남권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건립	-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 학교폭력 등 심리·정서적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증가, 이에 따라 능동적·예방적 차원의 전문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필요 - 호남지역(광주, 전남, 전북, 제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상담실적 55만 8천여 건 중 정신건강 문제 상담이 약 6만 2천여 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2012년 개원/경기도 용인시) 및 국립영남권청소년디딤센터(2021년 개원 예정/대구광역시) 설치 운영과 더불어 호남권역 내 청소년 치료재활 시설 설치가 필요 - 정책대상: 심리·정서적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및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 사업내용: 가칭)국립호남권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통한 「보호+치료+교육+자립」 종합적·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32	아동 분과	아동복지 자원리스트 구축 (2019년 연속사업)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이용 가능한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동욕구를 바탕으로 한 '자원리스트' 자료 제작(책자 학교에 배포, 홈페이지 자원목록 탑재 및 위기 상황별 접근 가능한 복지자원 연동 등)
33		0~2세 영아중심 어린이집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정책적용대상: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 사업내용: 운영비지원 (1안) 영아반 반당 월운영비 0세반-20만원, 1~2세반-15만원 (2안) 영아반 반당 월운영비 10만원
34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법정부담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및 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어린이집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안 - 정책적용대상: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10인 이하 사업장 전교직원) - 사업내용: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법정부담금 지원 - 소요예산: 38억2천8백만원 (495개소×4명×161,140원 ×12월)
35		보육교직원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	보육교직원의 건강확보로 영유아의 건강보장 - 정책적용대상: 보육교직원 10,610명 - 소요예산: 2억7천만원
36		취사원 인건비 상향지원 요청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상향지원 요청 - 정책대상: 미지원어린이집(가정,민간) 공공형 포함 취사부 1인 - 소요예산: 57억3천8백만원(797개소×60만원×12월)

4.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분과위원회 1기 운영 문제점과 제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분과위원회 1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언은 다음과 같다. 1기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복지협치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복지협치 전담기구 역할수행을 통해 느낀 점, 위원회 위원 의견, 각종 협치사업 평가 결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1기 복지운영위원들이 인지하는 분과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은 광주광역시 유사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성에 관한 문제, 분과 간 충분한 의사소통의 부재, 분과위원활동의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와 위원활동의 책임성에 대한 제기가 하였다.

또한, 분과위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논의 구조에 난항이 있었으며, 분과의 역할이 모호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복지종합분과의 경우는 분과 간 중복적 요소 발생하고, 복지협치의 과정에서 의제개발 범위의 모호함이 논의되었다. 현안문제에 대한 복지협치위원들의 정보도 부족하고 정책적 역량에 있어서도 경험부족 등 편차가 존재하였다. 또한 정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정책제안 과제의 한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복지협치운영에 있어 시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문제점	개선방안
• 법규에 등재된 광주광역시 유사위원회와 기능 중복성 및 차별성 문제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정책협의체,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 제2기 복지협치위원회·분과위원회 활동 전 명확한 협치 운영 방향성 설정 - 의제발굴 범위의 명확화, 문제제기를 뛰어넘어 문제해결까지 민·관·정 협치로 이행 - 긴급현안사항 발생 시 협치분과 중심 논의 (별도 T/F팀 구성이 아닌 협치분과 활용) - 연간 협치활동 이행표 제안
• 단순화된 복지협치 조직체계로 분과간 충분한 소통 부족	• 분과별 협치과제 등 선정 후 분과 전체회의 추진, 분과별 현황 공유 및 숙의과정을 통한 우선 과제 선정 등
• 분과위원간 평등성(수평적 협력관계)과 위원 활동의 책임성 미흡	• 갈등단계에서 조정과 조율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경험 필요 회의 시 호칭 통일, 회의 연속 불참 시 패널티 적용
• 분과위원의 잦은 변동 및 실무진 참여자 부족	• 분과위원 임기기한 내 지속활동이 가능한 자로 추천하여 구성(활발한 논의구조를 위해 위원 구성 검토 필요)
• 복지종합분과의 역할 모호 및 일부 분과의 논의 주제 중복 -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분과 구성의 유연성 부족	• 분과 재구성(폐지, 통폐합, 신설 등)
• 개발 범위의 모호함, 현안문제에 대한 정보부족, 정책역량 및 경험 부족, 정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정책 제안 과제의 한계	• 정책기획과정 교육, 복지동향과 복지영역별 현안에 대한 기초조사, 세미나, 토론회 등 수시 개최
• 복지협치위원회 제안사항으로 복지시설 관계자 중심의 시설 이해관계 논의에서 확장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민 소통형 의제개발과 공동실행 조직으로 역할 강화 필요	•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민관정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

[그림 3-2] 협치운영 문제점과 개선안

제3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제2기 분과위원회 운영현황[2)]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분과위원회 제2기 운영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제13조(전담기구)에 따라 전담기구에서 운영되었다. 제2기 복지협치의 운영목적은 '시민의 복지를 시민을 위한 더 나은 복지로'로 선정하였다. 복지협치 운영과제로는 2021년 광주복지협치 토대를 구축하고 2020년 광주복지협치를 강화로 선정하였다. 2021년 복지협치 토대구축을 위해 협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광주복지협치 문화조성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제2기 분과위원회 운영

광주광역시 분과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제3조(市 조례 제5057호)에 근거한다. 2020년 11월 13일에는 전담기구의 역할을 복지협치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뿐만 아니라 복지협치를 위한 복지협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협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1기 분과위원회의 전담기구는 광주복지재단에서 제2기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였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2기 운영을 살펴보면, 8개 분과이다. 2기 복지협치 분과위원회는 총 8개 분과로 1기의 아동분과와 보육분과를 통합하여 보육아동분과로 운영하였다. 복지종합분과, 지역복지분과, 노인분과, 장애인 분과, 정신건강분과, 여성가족분과, 보육아동분과, 청소년 분과 총 8개 분과이다.

2)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분과위원회 제1기 운영결과 및 성과보고(광주복지재단, 2020) 요약 및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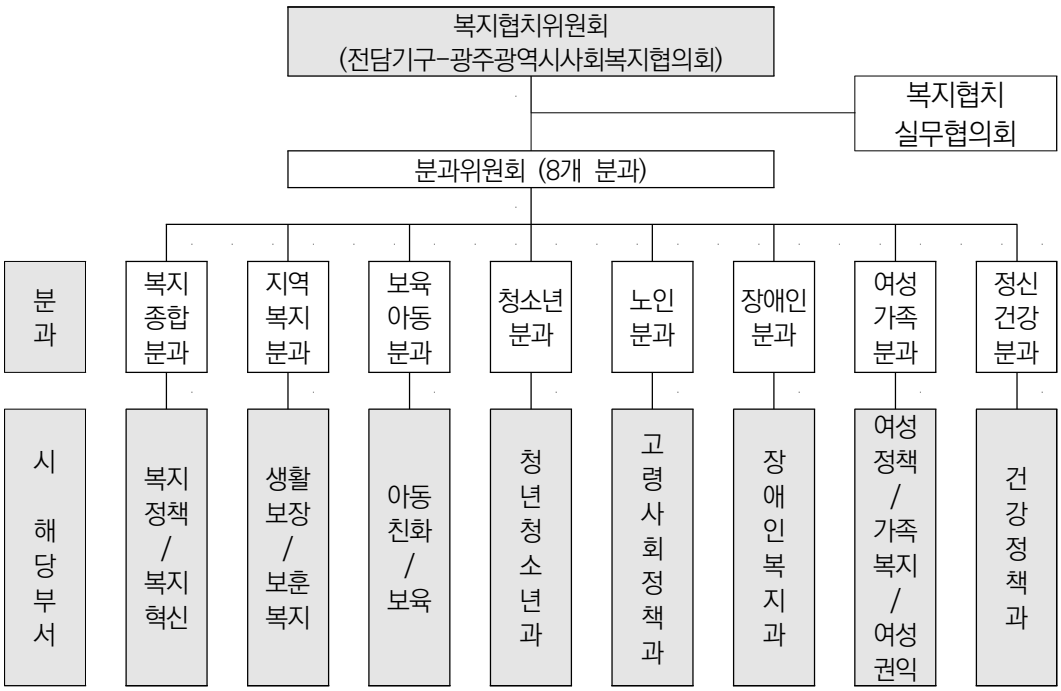

[그림 3-3] 광주복지협치 2기 운영 체계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2기 복지협치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5개의 운영과제 12개의 추진사업으로 운영되었다. 운영과제를 보면, 협치위원역량강화, 신뢰와 열정을 바탕으로 한 열린회의, 광주복지를 위한 협치적 의제실현, 광주협치 기본계획 수립, 운영체계 구축이다. 협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위원들간의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인식개선과 실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협치학교와 복지협치 워크숍이 있다. 열린회의는 협치위원 정기회의, 분과위원 정기회의, 협치실무협의체 정기회의, 분과위원장 및 간사회의이다. 광주복지협치를 위한 협치적 의제실현은 협치의제실행 및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를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진행, 복지협치 알리기 및 시민회의로 시민총회와 광주복지협치 플랫폼 구성과 복지협치백서 발간이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광주복지협치 기본계획수립, 마지막으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치 전담기구의 지원 등이다.

〈표 3-6〉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2기 운영계획

운영과제	추진사업
과제 1 : 협치위원역량강화	① 복지협치학교 -민관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인식개선과 실천적 학습 기회를 제공
	② 복지협치워크숍 -분과회의진행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협치 촉진자 워크숍 실시
과제 2 : 신뢰와 열정을 바탕으로 한 열린 회의	① 협치위원 정기회의 연 2회 및 임시회의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② 분과위원 정기회의 연 4회 및 임시회의 -분과별 정책의제 발굴 등
	③ 협치실무협의체 정기회의 분기별 1회 및 임시회의 -협치위원회·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등
	④ 분과위원장 및 간사회의 격월 1회 및 임시회의 -분과별 의제의 공유/ 분과별 네트워크 등
과제 3 : 광주복지를 위한 협치적 의제 실현	① 협치 의제 실행 및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토론회 및 워크숍
	② 복지협치알리기 및 시민회의 -시민총회 및 광주복지 협치 플랫폼 구성 -협치 백서 발간
과제 4 : 광주협치 기본계획 수립	① 복지협치 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 기반한 ‘실행계획’ 수립
과제 5 : 운영체계 구축	① 협치 전담기구의 운영체계 지원

4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 개발

제1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규정 검토

제2절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조사

제3절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

4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 개발

제1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규정 검토

광주광역시 복지 협치 기본 조례는 협치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운영 규정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운영 지침에 담기로 한다.

1. 조례 연역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2018.3.1.(조례 제 5057호) 제정되어 3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4-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개정 주요 내용

기구	기능		비고
	제정조례	현조례	
복지협치위원회	심의의결 30명이내(일부)	심의의결 100명이내(전체)	
	공동위원장(3명) - 행정부시장 - 소관 상임위장 - 민간위원들이 추천하는 민간대표	공동위원장(3명) - 행정부시장 - 소관상임위원장 -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분과위원회	심의자문	심의자문	
전체회의	연1회	전체회의 삭제	현)협치위원회 정기회의가 전체회의로 운영
실무협의회		협의조정 및 지원	20년 신설
전담기구	사무처 (조직운영 및 사무처리)	사무처 (조직운영 및 사무처리)	실무협소속 → 실무협분리
간사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지원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지원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복지협치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 제정 조례는 30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나, 개정을 통행 현재는 협치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관정 대표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관은 행정부시장, 정은 소관상임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민간 위원장은 제정 조례는 민간위원들이 추천하는 민간대표로 규정하였으나, 현 조례는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구이다.

실무협의회는 2020년 개정을 통해 신설한 기구이다. 실무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전담기구는 협치 조직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기구이다. 제정조례는 독립기구로 명시하였으나, 2020년 개정을 통해 실무협의회를 신설하면서, 실무협의회에 속하도록 하였다. 그 후 다시 개정을 통해 실무협의회에서 분리하여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다만, 실제 운영현황을 평가하면, 전담기구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정 조례는 전체회의를 연 1회 개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 조례는 전체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복지협치위원회 정기회의(상반기 1회, 하반기 1회)가 협치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2. 기구 운영

광주광역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제3조).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복지협치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전담기구 및 간사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1) 복지협치위원회

(1) 기능과 구성

복지협치위원회는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주요 사항(제6조 제2항 각호)에 대한 심의·의결한다.

복지협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협치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관),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정), 사회복지협의회장(민)이 공동으로 한다. 행정부시장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은 관과 정의 대표성을 갖

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특정 민간단체의 장이 민간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며, 제정 조례와 같이 민간위원들이 추천하는 민간 대표로 회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복지협치위원회 위원 시민공모를 통한 선발, 단체·기관 종사자·추천자·대표자 등으로 구성하고(제6조 제3항 각호), 임기는 2년이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제8조). 회의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말난다(제9조).

위원장은 민관정의 대표성을 갖는 인사로서, 실무협의회나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 복지협치 기본원칙인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운영 지침에 위원장이 총괄하는 회의는 조례 제9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회의 절차

복지협치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9조(회의)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소관사항을 심의·자문하며, 구체적 기능은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을 포함한 5가지가 규정되어있다(제10조 제2항).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조례에는 분과의 종류, 구성 등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에, 운영 지침에 분과 종류, 구성 등을 제시하기로 한다.

분과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조례는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2호). 그러나 제1기, 제2기 및 제3기를 거치는 동안 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사문화 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기능은 '사회복지 분야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광주복지협치의 목적(조례 제1조)에 가장 부합한 기능이

다. 따라서 운영 지침에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의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3) 실무협의회

(1) 기능 및 구성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업무란 복지협치위원회의 업무를 말한다.

(2) 전담기구와의 관계

실무협의회는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제11조 제2항)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검토 및 조정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일정 등의 연계 및 조정
4.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
5.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복지협치에 필요한 지원

한편, 제정 조례는 전담기구의 기능으로 다음을 규정한바 있다.

1. 복지협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
2. 복지협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등 연계 및 조정
3. 민관정 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간담회 등 지원
4. 그 밖에 민관정 협치에 필요한 실무 지원

위와 같이 조례 연역상의 이유로 실무협의회 기능과 관련하여 전담기구 역할이 불명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 조례의 전담기구 규정을 살펴보면 실무협의회와 전담기구의 기능 및 역할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현 조례는 전담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복지협치에 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즉, 실무협의회는 협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전담기구는 복지협치에 관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다만,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은 다소 모호할 수 있으나, 실무협의회는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전담기구는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을 위한 절차적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3) 제언

실무협의회는 민간위원 5명 이상, 시의원, 복지협치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민간위원 5명 이상을 각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고 개정하면 복지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가 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4) 전담기구 및 간사

조례는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 전담인력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운영 지침을 통해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세칙을 보완하여야 한다.

협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제12조).

2. 복지협치 기본계획

복지협치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한다(제5조).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시행계획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3. 복지협치 사업 등

조례는 복지협치 시민회의, 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 백서발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복지협치 1기, 2기 및 3기 운영 현황을 토대로 필요한 절차를 운영 지침에 담기로 한다.

제2절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 조사

1. 의견 조사 목적 및 방법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조사는 광주복지협치 위원으로 참여 경험이 있는 민관정 관계자들과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 설계 당시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의견 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사전 개별 자문 등을 수행한 결과 간담회 형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전담기구에 의뢰하여 이루어 졌다. 다만, 선정기준은 제1기 또는 제2기에 협치위원으로 참여 경험이 있거나 제3기 협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 협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로 제시하였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확인한 결과 총 20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17명이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간담회는 2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90분씩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4-2〉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조사 참여자

참여자	성별	연령	협치경험	참여일시
참여자 1	남	55	3기 협치위원	2023.7.27. 09:30
참여자 2	남	49	2기 협치위원	
참여자 3	여	54	1기 및 2기 협치위원, 0기 실무협의회위원	
참여자 4	남	52	2기 및 3기 협치위원, 0기 실무협의회위원	
참여자 5	남	60	1기 및 2기 협치위원	
참여자 6	여	49	2기 및 3기 협치위원	
참여자 7	여	49	3기 협치위원	
참여자 8	남	57	2기 협치위원	
참여자 9	남	54	2기 및 3기 협치위원, 0기 및 0기 실무협의회위원	
참여자 10	남	50	1기 및 2기 협치위원	2023.7.27. 14:00
참여자 11	남	67	2기 및 3기 협치위원	
참여자 12	남	39	1기 및 2기 협치위원	
참여자 13	남	54	1기 협치위원	
참여자 14	남	65	2기 및 3기 협치위원, 0기 실무협의회위원	
참여자 15	여	50	1기 및 2기 협치위원	
참여자 16	여	51	2기 및 3기 협치위원	
참여자 17	여	52	2기 및 3기 협치위원	

주. 실무협의회위원은 기수, 성별, 연령 조합으로 특정인이 식별될 수 있으므로 기수를 '0'기로 표기함

2. 의견 조사 결과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문제는 협치기구의 기능 비명확성, 민관정의 비대칭적 참여(행정의 소극성), 전담기구의 기능과 독립성, 발굴의제의 실행력 및 참여 인센티브 부제 등으로 정리되었다.

[그림 4-1]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 조사 단어 뭉치

1) 기구 기능 명확화

(1) 기구 기능 명확화 필요성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공동위원장, 복지협치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에 해당하는 전담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각 기구의 기능이 다소 불명확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 마련 시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도 이제 많은 것들이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고 여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많은 부분이 좀 중첩되어 있고 해서 조금 명확하게 이런 역할 분장이 좀 되어진다면(참여자 17)"

(1) 공동위원장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간 협의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정기회의, 임시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소관 상임위원회위원 및 사회복지협의회장이 공동으로 한다. 공동위원장(당연직)의 무게를 고려 할 때, 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대표 및 회의(정기회의, 임시회의) 총괄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협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협치기본원칙(조례 제3조)과 다소 거리가 있다.

"공동위원장들이 정말 수평적 자리에서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도 되어 있습니다(참여자 17)"

"공동위원장이 세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역할 협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최상위적인 실행으로. 그러면 에 부시장은 음 정책 개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서는 조례나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민간에서는 그 의견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협치를 위해서 하나로 묶어서 내는 것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참여자 11)"

(2) 협치위원회

협치위원회는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협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3인을 포함한 협치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정기회의는 년간 2회(상반기, 하반기) 협치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규모로 개최한다. 따라서 주요 사항에 대한 면밀한 심의는 기대하기 어렵고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승인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협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면밀한 사전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협치위원회가 이제 가장 현재로서는 대표성을 가지는 이건데 이 협치위원회를 제 생각에는 전체 회의 같이 차라리 하고 심의 의결은 하지 않고 전체 모임정도로 하고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 협의회라든지 대표 협의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 협의체 같은 곳에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참여자 9)"

"협치위원회가 현재 저희 현재 94명의 의원이 3기가 꾸려져 있는 분들이심의 의결 권한이 있으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기부터 3기를 거쳐 오는 동안에 모든 이제 결정권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안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정하고 이게 좀 승인하는 역할은 실제적으로 실무협의회가 했다라고 보여지고요(참여자 17)"

(3)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는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기구이다. 실무협의회를 신설하면서 개정 전 전담기구의 기능을 실무협의회 기능에 포함하였다. 그 후 재차 조례 개정을 통해 전담기구를 실무협의회에서 분리하였으나 기존에 전담기구 기능의 일부를 실무협의회에 남겨둔 상황이다. 다만, 실제 구성과 운영 현황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라기 보다는 오히려 운영위원회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은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무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전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실무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말 그대로 실무위원회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 논의를 하고 그걸 각 분과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서 복지 협치위원회로 올라오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하는데.....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참여자 8)"

"조례상으로는 협치위원회라는 저희 현재 94명의 의원이 3기가 꾸려져 있는 분들이 심의 의결 권한이 있으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기부터 3개를 거쳐 오는 동안에 모든 이제 결정권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안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정하고 이게 좀 승인하는 역할은 실제적으로 실무협의회가 했다라고 보여지고요(참여자 17)"

"실무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들은 어떤 각 해당 분과의 어떤 의제를 제안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갖고 실무 협의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분과장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실무분과에서 나왔었던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실무 협의에서 해 주고요 (참여자 9)"

(4) 전담기구

전담기구는 제정 조례에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 보아도 조직 운영 및 사무 처리 외에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운영 지침에서는 전담기구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기구가) 현재 계속적으로 협치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라든지 실무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간사 역할로만 따라다니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참여자 17) "

"협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라고 만들어진 게 전담기군데, 그런 역할들은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전담기구가 내일 위원회 해야 되니까 위원님 참석하실 거죠? 라고 참석 독려 전화하는게 전담기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참여자 10)"

또한 전담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치 전담기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 준 게 아니다. 잠시 사회복지협의회에 협치 전담기구를 지금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담기구의 어떤 그 독립성과 그거에 대한 보장은 관과 의회에서도 전담기구를 협의에 다루듯이 전담기구를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좀 진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참여자 17)"

"전담기구에 저는 전담인력 그 인력의 전문성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나 처우의 부분에서도 좀...(참여자 16)"

2) 행정의 소극성

광주복지협치는 민관정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다. 1기, 2기 및 3기 운영 과정에서 민간과 의회의 참여에 비해 행정의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가 1기 2기 협치위원을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인데 그 관에서 갖고 가는 생각이 이제 협치 자체를...굉장히 수동적...(참여자 10)"

"행정과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잘 명시했으면 좋겠고요(참여자 5)"

3) 발굴의제 실행력

협치에서 발굴된 의제의 실행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제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굴된 의제가 행정의 실행 의지에 좌우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발굴된 의제가 실행 가능하도록 행정의 의지와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작년에는 우리가 의제를 제안하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000대표님도 나와

있지만 엄청 연구부터 실태조사도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의제에 관해서 되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행정에 부딪히면 의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연구하고 실태조사 했어도 반영이 안 되면...어떤 제안을 하거나 의제를 할 때 행정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핵심 의제를 정책을 개발하고 의제를 제안해도 과연 반영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참여자 6)"

"저희 분과 예를 들더라도...관련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게 이제 조례 제정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 수립 및 시행 그러니까 이게 민관정이라면 관도 주머니를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거에 지금 몇 년째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쓸데없는 조례가 하나 더 얹혀져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4)"

"저는 00분과에서 1, 2기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아무것도 이거 할 수 없구나 싶어가지고 3기 때는 지원을 안 했어요(참여자 5)"

"2기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의제도 발굴하고 이 부분 논의하고 의회와 같이 정책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 다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예산 반영은 하나도 안 되고 이게 이제 하나마나 하는 짓을 거의 한 2년 가까이 한 거예요... 민관정이 같이 들어와서 논의하고 책임지고 조례에서 얘기한 대로 의제 발굴에서 예산이나 평가까지 갈 수 있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참여자 5)"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민관정 공론의 장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그래도 이 정도의 복지협치 체계를 가지고 음 유지해 온 것만으로도 큰 성과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참여자 15)"

나아가, 3기 협치 출범 이후 긍정적 변화가 목격되기도 하였다.

"3기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좀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그 행

정과 의회의 참여가 굉장히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참여자 17)"

4) 동기부여

민간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동기부여 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간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이나 의회에서 진행하는 위원회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민관정 협치에는 이게 이제 다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참여자 2)"

"저희가 이 앞번 회의 때 어 열 시에 저기 저 그 원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왜냐하면 10시에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민간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경제활동 안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제가 그것 보고 귀한 시간 나와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왜 아이디어를 공짜로 가져가(참여자 11)"

제3절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

차 례

1.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 개요
2. 복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간사
6. 전담기구
7. 복지협치 시민회의
8. 복지협치 기본계획
9. 복지협치사업
10. 복지협치백서

1.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 개요

1)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 작성 방향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안을 기본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는 협치 운영에 관하여 기본 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현황 평가, 조례 검토 및 협치 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세칙]으로 보완한다.

다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 [문제점] 및 [개선안]을 통해 개정 이유와 방향을 제시한다.

2) 광주복지협치 운영 체계

[그림 4-2] 광주복지협치 운영 체계

2. 복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근거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6①).

2) 기능: 심의·의결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6②).

1호.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2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3호.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호. 복지혁신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성

(1) 위원

위원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7①)

(세칙) 민간위원 00명 내외, 행정위원 00명 내외, 의회위원 0명 내외, 공공위원 0명 내외)

(2) 구성 원칙

민·관·정·공공을 대표하도록 구성한다.

① 민간위원(§7③1~4호)

1호. 시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
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호.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호.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하는 사람

② 행정위원(§7③5호)

5호.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등 관련부서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③ 의회위원(§7③6호)

6호.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④ 공공위원(§7③7호)

7호.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여성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및 복지협치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복지협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7③8호)

⑥ 성별 균형 유지

위원회 위원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7③ 단서).

⑦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

광주광역시 소속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각종위원회 조례 §6⑤). 다만, 의회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각종위원회 조례 §6⑤ 단서).

(세칙) 민간위원 공모 선정

□ 선정인원: 00명 내외

□ 응모자격: 조례 제7조 제3항 1호, 2호 및 4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시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

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하는 사람

□ 선정 기준

○ 복지 분야별 종사자 등 전문 인력을 균등하게 안배

○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 및 활동경력이 많은 사람 선정

○ 특정 성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각종위원회 조례 §6③)

○ 광주광역시 소속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음(각종위원회 조례 §6⑤)

□ 선정 방법

위원회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응모자 평가 및 결정

□ 대상자 선정통지: 개별통지 및 시 누리집 공고

〈표 4-3〉 (참고자료) 제3기 복지협치위원 선정표

	분과	접수	선정	성별		민간위원 접수경로(공모/추천)			
				남	여	공모	시 추천	시의회 추천	단체 추천
1	복지종합	12	8	4	4	-	1	-	7
2	지역복지	9	8	5	3	-	-	-	8
3	장애인	20	9	7	2	1	-	1	7
4	노인복지	11	9	6	3	3	-	-	6
5	정신건강	9	9	5	4	-	-	1	8
6	여성가족	8	8	1	7	-	1	-	7
7	보육아동	11	8	4	4	-	-	1	7
8	청소년	8	8	5	3	1	-	-	7
	계	88	67	37	30	5	2	3	57

4) 임기

(1) 원칙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7④ 본문).

(2) 직위 관련 위원

민간위원 중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 행정위원, 의회위원 및 공공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7④ 단서).

(3) 추가 위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7⑤).

5) 임명 및 위촉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7③ 본문).

(세칙)
임명: 행정위원
위촉: 민간위원, 의회위원 및 공공위원

6) 위원장

(1)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공동으로 한다(§7②).

(세칙)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문제점) 특정 민간 단체를 민간위원장으로 규정한 것은 대표성 원칙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요구된다.

(개선사항) 민간위원장은 제정 조례에서 규정한 것처럼, 민간위원들이 추천하는 민간 대표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2)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8①).

(세칙)
□ 위원장이 총괄하는 회의는 조례 제9조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말한다.
□ 위원장은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나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한다.

3)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8② 전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8② 후단).

7) 회의

(1) 운영시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9①).

1.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세칙)
□ 정기회의는 상반기 3월과 하반기 11월에 개최한다.
□ 실무협의회와 전담기구는 주요 심의·의결할 안건을 상정하고, 협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안을 심의·의결한다.

2)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9②).

(세칙)
회의 개최 사항(일시·장소·안건 등)은 7일 전까지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한다(각종 위원회 조례 §9①).

3) 의사·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9③).

(세칙)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인지 여부는 위원장 3명의 협의로 정한다.

4) 회의록 등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 등은 회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9④ 본문).

(세칙)
광주복지협치 전담기구 누리집 게시판을 통한 공개는 시 누리집을 통한 공개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9④ 단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동법 §9①)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각종위원회 조례 §10 1호)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록 등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각종위원회 조례 §10 3호)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근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10①)

(세칙)
분과위원회는 복지 분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8개로 한다.

분과	시 해당부서
복지종합분과	돌봄정책과 복지정책팀, 통합돌봄팀 및 법인시설관리팀 (역할추가) * 타 분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 * 타 시 소속 위원회(민관협치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와의 협업 * 중앙정부 복지정책 * 시와 현장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복지정책 등
지역복지분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및 보훈복지팀
보육아동분과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및 아동친화팀
청소년분과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 및 청소년복지팀
노인분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분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분과	여성가족과
정신건강분과	건강정책과

2) 기능: 심의·자문기구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자문(§10①)하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0②).

1호.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

2호.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3호.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4호. 분과별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조사·연구
5호.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장이 인정하는 사항

(세칙)
□ 「1 호.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하여 민관정은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민: 복지현장과 시민의 주요 문제 발굴과 공유
관: 주요시책, 달라지는 정책자료, 시와 현장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복지정책 등 공유
정: 시민의 애로사항 및 문제, 현 조례의 문제점 등 공유

□ 분과위원회는 의제발굴 과정에서 공론화를 위해 간담회 또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협치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치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간담회 또는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세칙)
□ 「2 호.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 주요 복지 정책 수립 시 해당 분과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정책 설명 및 의견 청취
○ 주요 복지 정책
- 3개년 이상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복지 관련 기본 계획
- 연간 예산 5억 이상으로 하는 단일 정책이나 사업
- 부서장이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이나 사업
-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요구한 정책이나 사업
민: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정기적 시행 평가 및 개선의견 제시
정: 주요 복지 정책 예산안 심의 시 협치 심의·자문 여부 반영

(문제점)
「4호. 분과별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조사·연구」는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심의·자문 기능을 넘어서는 것으로 본다.

(개선사항)
「4호. 분과별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조사·연구에 대한 의견제시」로 수정한다.

(기능 보완)
시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분과별 모니터링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차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모니터링 주체가 모호하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면, 민·관·정 협치의 전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 보완 방법으로 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을 5호. 복지협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본다면, 조례 개정 없이 지침(세칙) 규정만으로 가능하다.

3) 구성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0③).

(세칙)
1. 위촉직 협치위원은 선정 단계에서 분과별로 선정한다.
2. 협치위원회 협치위원 구성을 위한 「성별 균형 유지」 지침은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구성에 준용한다.
3. 분과위원의 임기는 협치위원회 협치위원의 임기와 같다.

(문제점)
협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인 위원(행정위원 등)이 분과위원장에 선정될 경우, 분과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개선 요청사항)
분과위원장은 임기가 2년인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 임기가 2년인 분과위원이란 협치위원 중 시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7③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7③2호) 및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7③3호)을 말한다.

4) 회의

(1) 운영시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0④).

1.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세칙) 정기회의는 0월, 0월, 0월 및 0월에 개최한다.

(2) 운영

(세칙) 분과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치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준용한다. 1.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를 총괄한다. 2.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분과회의 개최 사항(일시·장소·안건 등)은 7일 전까지 분과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한다.

(3) 의사·의결 정족수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0⑤).

(4) 분과 회의록 등 공개

(세칙) 분과 회의록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은 협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10⑥).

4.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근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복지협치실무위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1① 전단).

2) 기능: 협의·조정 및 운영지원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1②).

1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2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검토 및 조정

3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일정 등의 연계 및 조정

4호.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

5호.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6호. 그 밖에 복지협치에 필요한 지원

(세칙)

□ 각 호의 위원회는 복지협치위원회를 말한다.

□ 실무협의회는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전담기구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사무처리’를 수행한다)

□ 위 4호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는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전담기구는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을 위한 절차적 사무처리를 수행한다.

3) 구성

(1) 위원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① 후단).

(세칙)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구성원칙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1③).

1호. 민간위원(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5명 이상

2호. 시의회 의원

3호. 복지협치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4호. 위원회의 간사

5호.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

(세칙)

□ 제3호 공무원 구성은 돌봄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을 우선으로 한다.

□ 제4호 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구가 대신할 수 있다.

□ 제5호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3명)을 말한다

(문제점)

제1호 민간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개선사항)

민간위원 구성 원칙을 제시한다.

(제안사항)

민간위원은 분과위원장(8명)으로 구성한다.

- 분과위원장은 분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분과 운영지침)
- 조례에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회의」는 폐지한다.

3) 위원장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1④).

(세칙)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 회의를 총괄한다.

4) 임기

(세칙)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협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5) 회의

(1) 운영시기

(세칙)
□ 정기회의는 연 4회(협치위원회 정기회의 및 분기별 분과 정기회의 개최 전 또는 종료 후)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운영

(세칙)
1.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항(일시·장소·안건 등)을 7일 전까지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한다(각종위원회 조례 §9①).

(3) 의사·의결 정족수

(세칙)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실무협의회 회의록 등 공개

(세칙)
실무협의회 회의록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은 협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11⑦).

5. 간사

1) 근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12 전단).

2) 기능

(세칙)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호. 협치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회의 소집 보조
2호. 회의록 작성
3호. 그 밖에 협치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구성

협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12 후단).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위원 중 선임된 간사에게 책임감 있는 사무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담기구에서 간사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개선방안)
전담기구의 기능이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처리(§13)에 있다는 점에서 협치위원회 간사는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담기구 인력 2명이 분과위원회 간사까지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담기구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되, 소정의 간사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6. 전담기구

1) 근거

시장은 복지협치에 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13).

2) 구성

(세칙)
□ 제3기 광주복지협치 전담기구는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둔다.
□ 전담인력은 2명으로 한다.
□ 전담기구 예산(인건비 및 일반사업비)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과 독립하여 회계한다.

3) 연간 주요 사업 및 추진 일정

(세칙) 전담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과 사무의 처리를 한다.

〈표 4-4〉 광주복지협치 주요 추진 사업 연간 추진 일정

일 정 (월) / 세부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복지협치학교				▶				▶				
복지협치워크숍										▶		
협치위원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	
분과위원정기및임시회의			▶		▶		▶		▶			
협치실무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		▶		▶		▶					
자문위원회의				▶	▶	▶	▶	▶	▶	▶	▶	▶
분과별 토론회 및 워크숍								▶	▶	▶	▶	
시민회의										▶		
협치홍보				▶	▶	▶	▶	▶	▶	▶	▶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	▶	▶	▶	▶	▶	▶	▶	▶	▶	▶	▶
운영체계구축	▶	▶	▶	▶	▶	▶	▶	▶	▶	▶	▶	▶

7. 복지협치 시민회의

1) 근거

시장은 광주복지 협치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협치 시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15①).

2) 기능: 협치 공감대 확산과 홍보

(세칙)
복지협치 시민회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호. 복지협치 운영현황 보고
2호. 시민의 광주복지 정책 제안
3호. 복지협치 주요 의제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4호. 시민의 광주복지협치 의제 제안
5호. 그 밖에 협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운영 시기

(세칙)
□ 복지협치 시민회의는 사회복지의 날(9.7.)을 전후하여 개최한다.
□ 협치위원회는 시민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민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다.

4) 시민회의 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복지협치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5②).

(세칙)
□ 협치위원회는 시민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안전 중 시장에게 제출할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장은 의결된 안건을 의결 후 1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접수 후 3개월 내에 안건의 시정 반영 여부를 협치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복지협치 기본계획

1) 근거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5①).

(세칙)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시장이므로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 이름으로 수립한다.

2) 기능: 복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5②).

1호. 복지협치 정책의 기본방향

2호. 복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호.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호. 복지협치 지침 작성과 관리

(세칙) 기본계획 수립에 복지협치 운영 지침 개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운영 지침 개정을 포함한다.

5호.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계획기간

기본계획의 계획 대상 기간은 3년을 단위로 한다(§5① 본문).

(개선사항)
협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 대상 기간은 4년 단위가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전면개정조례는 계획기간을 4년 단위로 규정한바 있다.

4) 연차별 시행계획 및 환류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복지협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시행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5③).

5) 의회 보고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5④).

6) 광주복지협치 기본계획 연차별 추진 일정

〈표 4-5〉 광주복지협치 기본계획 연차별 추진 일정

전략	핵심과제	실행내용	2023	2024	2025	연계 과제
Ⅰ. 복지협치 기반강화	Ⅰ-1. 복지협치 가이드라인 작성·관리	복지협치 가이드라인 기획 공론화 및 위원회 추진	○			
		복지협치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작성	○	○		
		복지협치 가이드라인 보급 및 교육		○	○	
	Ⅰ-2. 전담기구의 강화	전담기구 인력 충원 및 업무분장 충원(연1명)	○	○	○	
		전담기구 인력 수급 계획 및 실행	○	○	○	
		복지협치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	○	
	Ⅰ-3. 시민대상 복지협치 문화조성 지원	시민회의 및 복지협치 우수사례 공유 운영	○	○	○	
		광주 시민복지협치 마일리지 제도 도입	○	○	○	
		광주복지협치 시민위원회 제도 구성 및 운영		○	○	
Ⅱ. 지속가능 협치자원 조성	Ⅱ-1. 의제실행예산 조성	복지협치 친화형 예산제 공론화 및 기구추진	○			
		복지협치형 예산 추진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		○		
		복지협치형 시범사업 추진			○	
	Ⅱ-2. 관련제도 재정비	기존 복지협치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 정비	○	○	○	
		위원회 관련 운영체계 정비(역할과 기능 강화)	○	○	○	
Ⅲ. 복지협치 운영 내실화	Ⅲ-1. 숙의기반 정책발굴	의제발굴-기획-집행-평가 운영모델 개발	○			Ⅰ-1
		온라인 기반 숙의기반 조성	○	○	○	Ⅲ-3
		오프라인 기반 숙의기반 조성	○	○	○	Ⅲ-2
	Ⅲ-2. 복지협치 위원회 역할 및 위상 강화	복지협치위원회의 위상 강화	○	○	○	
		복지협치위원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체계 마련	○	○	○	
		분과 운영체계 운영	○	○	○	
	Ⅲ-3. 광주복지협치 PI플랫폼 구축	광주복지협치 PI(public Involvement)플랫폼 구축 및 운영	○	○	○	Ⅲ-3
		복지협치 백서 발간		○	○	
Ⅳ. 복지 협치력 강화	Ⅳ-1. 광주복지협치학교 운영	복지협치학교 운영(신규위원-지속위원별 교육)	○			
		복지협치 학교 교육프로그램 확대	○	○		
		광주복지협치 교육모델 개발		○	○	
	Ⅳ-2. 복지협치평가 체계 구축	복지협치 평가지표 개발	○			Ⅰ-1
		복지협치 평가지표 도입	○	○	○	Ⅰ-1
		복지협치 모니터링 운영		○	○	

9. 복지협치사업

1) 근거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7①)

2) 사업 내용(§17① 각 호)

1호. 복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호. 국내외 복지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3호. 복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4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5호.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개최
6호. 복지협치사업의 집행 및 관리체계 구축
7호.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사업의 위탁

시장은 복지협치사업(§17① 각 호)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복지협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7②).

복지협치사업을 위탁할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17③).

4) 복지협치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복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협치사업(§17① 각 호)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7④).

5) 제3기 광주복지협치 추진 사업

(세칙) 전담기구는 광주복지협치 주요 추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과 사무를 처리한다.

〈표 4-6〉 광주복지협치 주요 추진 사업 세부 내용

사업명	세부내용
복지협치학교	○협치에 대한 체계적 학습 지원을 통한 광주형복지모델 기초 토대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시행 ○대상: 복지협치위원 ○회기: 연 2회(상/하반기) 회당 4시간 ○내용: [교육커리큘럼]문화, 예술 종교, 노동, 교육 등 협치의 발견 -협치기본+심화교육, 협치 타 지역 우수사례, 협치의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등
복지협치 워크숍	○광주복지협치에 대한 이해와 목표 일치, 협치 촉진자 역할 정립 ○대상: 복지협치위원 ○회기: 1회(하반기 집중 워크숍) ○내용: 협치의 전과정(의제 발굴-제안-결정-집행-평가) “협치탐색 프로그램” 실시 등
분과별토론회 및 워크숍 지원	○대상: 복지협치위원회 위원 및 광주시민 등 ○운영시기: 연중(분과별 추진) ○내용 -분과별 발굴된 의제와 제안된 정책을 확대·심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추진
시민회의	○대상: 복지협치위원회, 복지현장, 광주시민 ○운영시기: 5월~10월/(시민회의 개최: 10월) ○내용 -광주시민이 더 나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 ‘광주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창구를 마련 -시민패널 모집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의제 발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시민’회의 개최 -우수사례 공유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 홍보
협치홍보	○대상: 광주시민 2,000명 ○운영시기: 4월~12월 ○내용 -광주복지협치 온라인플랫폼구축:홈페이지 구현 -정보공개 및 분과별 의제 공유 -사회복지회관 활용을 통한 협치에 대한 홍보 -홍보 활동가 및 시민기자단 양성

10. 복지협치백서

1) 근거

시장은 복지협치 정책의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려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복지협치백서를 발간한다(§18).

(세칙)
복지협치백서는 2년(협치위원 임기)마다 1회 이상 발간한다.

2) 내용

복지협치백서는 복지협치 정책의 추진사항 등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칙)
1호. 협치위원회 등 기구 운영 현황
2호. 복지협치기본계획 시행 현황 및 성과
3호. 복지협치의제 수행 현황 및 성과
4호. 복지협치 시민회의 운영현황 및 성과
5호. 그 밖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협치 운영 사항

5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제언

5 결론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광주복지협치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표준화된 운영 지침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협치 관련 문헌, 타시도 조례 및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 제1기 및 제2기 광주복지협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규정을 검토하였다. 조례는 광주복지협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의 해석에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으나 지침(안)에 세칙을 추가하여 해석을 명확히 하였다. 넷째, 광주복지협치 참여 경험이 있는 협치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치 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주협치운영현황 평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규정 및 협치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마련한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안)은 10장으로 구성하였다. 즉, 운영 지침(안) 개요, 복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간사, 전담기구, 복지협치 시민회의, 복지협치 기본계획, 복지협치사업 및 복지협치백서로 구성하였다.

운영 지침(안) 작성을 위한 기본 방향은 먼저 「광주복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관련 규정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 외에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행정기관 소곡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등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이상 관계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광주복지협치 운영 현황 평가 및 광주복지협치 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세칙'을 통해 보완

하였다. 또한 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개선사항'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절 제언

본 연구는 광주복지협치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표준화된 운영 지침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이미 조례 및 관련 법규(예,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지침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광주복지협치 운영이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돼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협치 관계자 및 참여자들이 조례와 운영 지침(안)을 참고삼아 협치 운영에 과(過)하지도 않고 부족(不及)하지도 않는 적정수준의 참여가 있다면 운영 또한 막힘없이 흐를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광주복지협치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운영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의제 실행력 확보를 위해 협치의제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 본다.

제1기 및 제2기에서 제안된 복지협치의제가 실행까지 이른 경우는 드믄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치 관계자 의견조사에서도 의제 발굴과 제안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여러 번의' 경험이 광주복지협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협치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에 제안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광주복지협치의 목적을 협치의제 발굴과 논의에 머무른다면 광주복지협치가 정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민간의 협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기 협치위원 중 민간위원은 57명이다. 이중 시민 공모로 위촉된 위원은 5명에 불과하다(단체 추천 57명, 시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민간의 협치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인센티브제, 즉 회의수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협치 관계자 의견조사에서도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요구가 수렴된바 있다. 다만,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협치의 개념과 참여수당이 공존 가능한가에 대하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셋째, 전담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다.

전담기구는 '광주복지협치'의 기구이다. 단지, 전담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기관(1기 광주복지재단, 2기 및 3기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잠시 위탁한 것이다. 따라서

전담기구의 인력, 예산, 사업이 수탁기관과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적극적 참여이다.

복지협치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조례 제3조 3호). 지난 1기 및 2기 광주복지협치 운영 과정에서 행정의 소극적 참여에 대한 민간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만, 3기 협치 운영에서 행정의 적극적 참여 모습이 엿보이는 점은 긍정적 신호이다. 행정에서 협치 의제 제안, 주요 복지 정책에 대한 분과위원회와의 소통 등으로 상호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준. 2000. 한국국가 재창조와 뉴거버넌스: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34(2).

김석준 외. 2002. 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대명문화사.

김진희. 2023.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계획 수립.

김창기. 2007.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와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2.

라미경. 2009.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 (3).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이재경. 2010. 시민입법운동과 협치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돈. 2010.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의 효과성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공공·민간부문 종사자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영재 · 주성수 · 박영선 · 정호기. 2020. 강남구 협치 기반조성을 위한 진단과 기본계획 수립. 강남구청

주성수. 2017. 복지국가와 복지정책. 서울: 한양대 출판부.

최성욱. 2003.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분석: 신거버넌스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0.

홍성태. 2002. 한국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와 정부-NGO 관계에 관한 연구: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Jessop, B. 1997. Capitalism and its future: remarks on regulation, government and governanc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4(3).

Jessop, B. (1998). The rise of governance and the risks of failure: the case of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Jessop, B. 1999. The changing governance of welfare: recent trends in its primary fuctions scale and modes of coordination.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4).

Stoker. 1998.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Kooiman, J. 1993. Modern Governance. London: Sage.

Kooiman, J., & Van Vliet, L. M. 1993. Governance and public management.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Lessons from contemporary European experience.

Rhodes, R,A,W. 2000. Transforming British Government. 2 vols. London: Macmillan.

UNDP. 2009. "What is Good Governance?"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good-governance.pdf
OECD. 2016. Open Government: The Global Context and the Way Forward,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8104-en

부록 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정) 2018-03-01 조례 제 5057호
(전부개정) 2020-09-28 조례 제 5545호
(일부개정) 2020-11-13 조례 제 5581호
(일부개정) 2021-04-20 조례 제 56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분야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협치"란 시민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예산, 조례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복지혁신 및 실천방안 등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복지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복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복지협치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복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협치에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복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협치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 · 시행 하되,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제1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복지 분야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기본방향
2. 복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복지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복지협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협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3.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복지혁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장(=〉 민간위원 중 호선)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1.4.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하는 사람

5.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등 관련부서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6.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4.20.〉

7.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여성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및 복지협치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개정 2021.4.20.〉

8. 그 밖에 복지협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부터 제

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간 협의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 등은 회의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자문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
2.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3.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4. 분과별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조사·연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⑤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복지협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검토 및 조정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일정 등의 연계 및 조정
4.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
5.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복지협치에 필요한 지원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4.20.〉

1.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5명 이상
2. 시의원
3. 복지협치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위원회의 간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20.〉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20.11.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전담기구) 시장은 복지협치에 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1.13.]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1.13.]

제15조(복지협치 시민회의) ① 시장은 광주복지 협치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협치 시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협치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11.13.][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1.13.]

제16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 선정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그 협력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과 시, 시의회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복지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11.1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1.13.]

제17조(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국내·외 복지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3. 복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4.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5.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개최
6. 복지협치사업의 집행 및 관리체계 구축
7.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복지협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복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11.1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1.13.]

제18조(백서 발간 등) 시장은 복지협치 정책의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려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복지협치 백서를 발간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11.13.][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1.1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11.13.]

부칙〈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2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각”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2018 - 11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안

(전진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18년 1월 26일
발 의 자: 전진숙 의원

1. 제안 이유

❍ 복지정책에서 의제 발굴, 정책 및 예산 수립, 결과 평가, 환류 등 모든 과정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에 민관정 협치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치 실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 “민관정 협치”란 민간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으로 복지정책, 복지예산, 조례 제정 · 개정,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함(안 제2조).

나. 전담기구: 민관정 협치에 관한 조직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위해 전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복지협치위원회 · 분과위원회: 민관정 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와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관정 협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분과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 제5조).

라. 전체 회의: 복지협치위원회 ·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복지 관련 종사자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체 회의를 연 1회 개최하여 복지에 대한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백서 발간: 복지정책 민관정 협치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려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복지협치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11조).

3. 관계 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3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의 의제 발굴, 정책 및 예산 수립, 결과 평가 및 반영 등 모든 과정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에 민관정 협치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치 실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정 협치"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으로 복지정책, 복지예산, 조례 제정 · 개정,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2. "복지협치자문관"이란 복지 분야의 시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전담기구) ① 이 조례에 따른 민관정 협치에 관한 조직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위해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단, 전담기구를 둘 경우에는 복지협치위원회는 시 소관부서, 분과위원회는 (재)광주복지재단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복지협치위원회 및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
2. 복지협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등 연계 및 조정
3. 민관정 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간담회 등 지원
4. 그 밖에 민관정 협치에 필요한 실무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복지협치위원회) ① 시장은 민관정 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현장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으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민간위원들이 추천하는 민간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부시장
2. 기획조정실장 및 복지, 여성 · 가족 등 관련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
4. 광주복지재단 및 광주여성재단 대표
5.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
6. 제5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장 및 전담기구 대표
7. 복지협치자문관
8. 그 밖에 민관정 협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로 정한다.

⑥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임대표가 그 위원직을 승계한다.

⑦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관정 협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영유아 · 보육, 아동 ·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 가족, 정신보건, 생활보장, 지역복지 등의 분과를 둘 수 있고,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1. 분과별 정책 발굴
2. 복지정책 · 예산의 수립 · 시행 · 평가 및 의제 수렴
3.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 실태조사 · 개선방안 모색 등

4.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등

④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의 합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 관련 직능단체 · 시설의 대표 및 종사자

2. 소관부서 관련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분과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의 관련 부서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공 · 설명 등에 협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전담기구 대표 또는 공동위원장의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복지협치자문관) 시장은 복지정책 개발과 민관정 협치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치 실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협치자문관을 둘 수 있다.

제8조(전체회의)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과 복지 관련 종사자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체회의를 연 1회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① 시장은 민관정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과 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복지정책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 선정 등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그 협력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정 협치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려 복지정책에 대

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민관정 협치 백서를 발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 2020 - 113 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수정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수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8. .

발 의 자 : 신수정, 정순애, 조석호, 박미정, 김꽃란, 장연주, 나현 의원 (7명)

1. 제안이유

❍ 복지협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복지정책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복지협치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자치 실현과 시민

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본원칙**: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복지협치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기본계획 등**: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 및 연도별 복지협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 **복지협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제9조, 제12조~제14조).

❍ **분과위원회**: 복지협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자문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실무협의회**: 복지협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회의 일정 등의 연계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복지협치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 **복지협치시민회의**: 위원회 위원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복지협치시민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5조).

❍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 복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복지정책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

❍ **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의 개최 및 복지협치 사업의 집행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협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에게 메일(rainbow0656@korea.kr)이나 팩스 또는 서면(직접제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찬반의견 및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문의 및 접수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화 062-613-5081, 팩스 062-613-5206)

5.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

6. 붙임 :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가 사회복지 분야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협치"란 시민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예산, 조례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복지혁신 및 실천방안 등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복지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복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복지협치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복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협치에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복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협치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기본방향

2. 복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복지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복지협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협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3.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복지혁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민간대표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하는 사람
5.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등 관련부서 과장·국장급 이상 공무원
6.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7. 광주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및 복치협치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8. 그 밖에 복지협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간 협의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 등은 회의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자문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
2.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3.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4. 분과별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조사·연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⑤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복지협치실무협의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검토 및 조정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일정 등의 연계 및 조정
4.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
5.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복지협치에 필요한 지원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추천하는 민간대표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주에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 5명 이상
2. 시의원
3. 복지협치 관련 부서 과장·국장급 이상 공무원
4. 위원회의 간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복지협치시민회의)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복지협치시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협치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 선정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그 협력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과 시, 시의회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복지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국내·외 복지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3. 복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4.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5.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개최
6. 복지협치사업의 집행 및 관리체계 구축
7.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복지협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복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백서 발간 등) 시장은 복지협치 정책의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려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복지협치 백서를 발간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각**"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록 4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 2020 - 143 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수정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수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0. .
발 의 자 : 신수정 · 송형일 · 조석호 · 정순애 · 장연주 · 나 현 의원

1. 제안이유

❍ 전담기구의 역할을 복지협치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뿐만 아니라 복지협치를 위한 복지협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협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전담기구**: 복지협치에 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에게 메일(rainbow0656@korea.kr)이나 팩스 또는 서면(직접제출)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찬반의견 및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문의 및 접수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화 062-613-5081, 팩스 062-613-5206)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

5. 붙임 :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전담기구) 시장은 복지협치에 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실무협의회) ① ~ ⑤ (생 략)	**제11조(실무협의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삭 제〉
⑦ (생 략)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13조(전담기구)** 시장은 복지협치에 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3조 ~ 제18조 (생 략)	**제14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부록 5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 2021 - 52 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수정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수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3. 16.

발 의 자 : 신수정·정순애·조석호·최미정·정무창 의원

1. 제안이유

❍ 복지협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민간부분 위원장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으로 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복지협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이 공동으로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에게 메일(rainbow0656@korea.kr)이나 팩스 또는 서면(직접제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찬반의견 및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문의 및 접수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화 062-613-5081, 팩스 062-613-5206)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

5. 붙임 :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민간대표 1명**"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광주복지재단**"을 "**광주복지연구원**"으로, "**복치협치**"를 "**복지협치**"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민간위원**"을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생 략)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민간대표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장----------.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6. ---------- 상임위원회 ----------
7. 광주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및 복치협치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7. 광주복지연구원---------- ---------- 복지협치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무협의회) ①·② (생 략)	**제11조(실무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추천하는 민간대표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신 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민간위원 5명 이상	1.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부록 6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9-03-02 조례 제 2866호
(전부개정) 2015-03-01 조례 제 4473호
(일부개정) 2018-03-01 조례 제 5050호
(일부개정) 2018-09-15 조례 제 5117호
(일부개정) 2019-11-01 조례 제 5314호
(일부개정) 2022-12-14 조례 제 59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

2. “당연직”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광주광역시가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위원회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신설(변경)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 설치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과 기능, 성격, 존속기한〈개정 2022.12.14.〉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방법 등

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조의조 신설, 2022.12.14.〉

② 위원회는 존속기한 경과 시 자동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청년의 시정 참여 보장) 시장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위원이 위원회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8.3.1.〉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1.]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11.1.〉

7.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위촉해제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019.11.1. 제목개정,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9.1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회의록 등의 공개) 회의록, 회의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삭제 〈2019.11.1.〉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록 등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개정 2019.11.1.〉

[2019.1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수당)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19.11.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운영실태 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위원구성 등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19.11.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④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정비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중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의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이라도 산입하여 적용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성·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에 2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10

광주복지협치 운영 지침 개발

발행인 ‖ 김 대 삼
발행일 ‖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전화 (062)607-5200 팩스(062)607-5219

ISBN 979-11-984868-0-6 :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Gwangju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2023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Gwangju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0 우체국보험회관 8층
T. 062)607-5200 F.062)607-5219 https://gwangju.pass.or.kr/

비매품/무료
9 791198 486806 93330
ISBN 979-11-984868-0-6